

감염병 관리시설 평가지침

감염병관리기관의 시설, 인력 및 운영 적정성 평가

2017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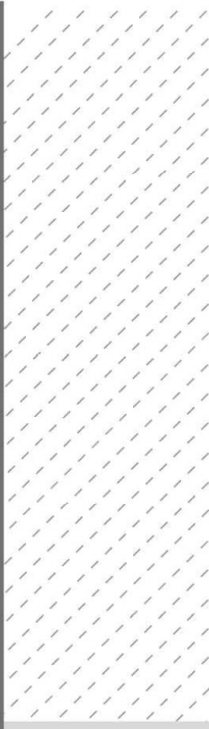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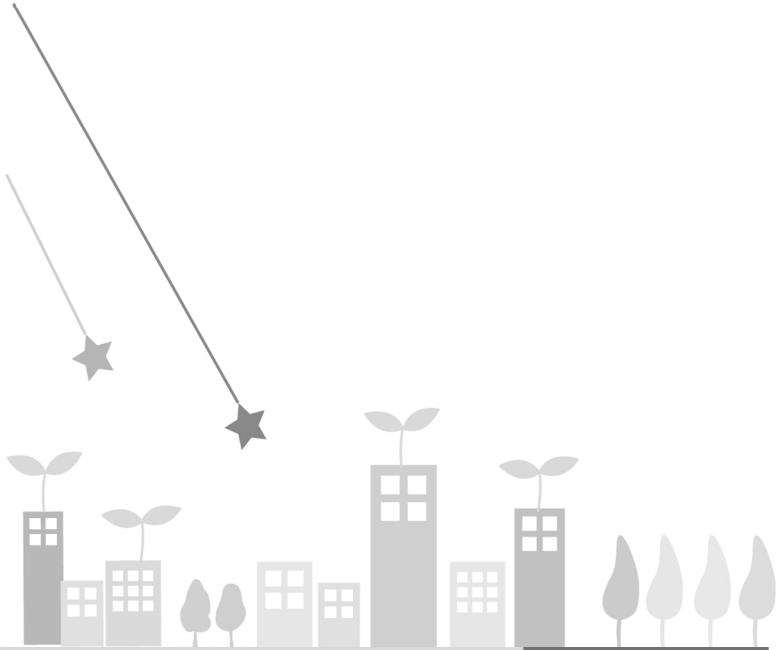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목 차

I. 개요	1
1. 평가개요	3
2. 평가체계	4
3. 2017년 시범평가 안내	8
II.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지표	11
1.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지표(총괄)	13
2. 평가지표별 평가기준(기준설명, 평가자료)	15
III. 서식	49
1. 2017년도 감염병관리시설 평가표	51
2. 추가 증빙자료 서식(지표 2-2-3, 3-1-4, 3-2-1, 3-2-4 관련)	78
3. 참고자료('17년 시범평가대상기관, 법령 등)	83



개 요

1

평가개요



목적

- 감염병관리기관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여 환자 및 의료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감염(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 가능한 격리병상의 상시 가동성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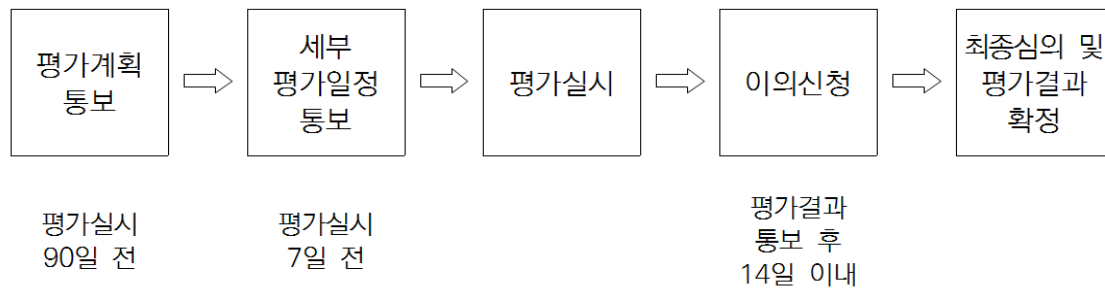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9조의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별표4의2
-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7-1호)

평가 방향

- 공중보건 위기시 감염병관리시설 활용 등 자원 동원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관리기관의 대비·대응태세 점검 및 관리 수준 향상 유도

평가 절차



※ 관련근거 :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 (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7-1호)

2 평가체계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 및 시·도지사

* '17년도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대상으로 시범평가(질병관리본부)

-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는 시설, 운영 등 구분하여 전문가 구성(총 8명 이상)

평가대상

- 평가대상 :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법 제36조)
 - 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
 - (법적기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지침”에 적합한 음압병상
 - ② 감염병관리기관 중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 (법적기준) 시행규칙 별표4의2 규정에 적합한 음압병실 1개 이상
 - ③ 감염병관리기관 중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
 - (법적기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 1개 이상
- 감염병관리기관 현황

구 분		개 소
감염병관리기관	총 합	216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29개
	300병상 이상 (지역별거점병원, 일반지정병원)	81개
	300병상 미만 (지역별거점병원, 일반지정병원)	106개

평가주기(안)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 : 매년
- 300병상 이상 및 미만의 감염병관리기관 : 격년

평가지표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적용 평가지표
 - 시설, 인력, 운영으로 구분하여 평가항목별 적합성 및 적정성을 평가
 - 평가항목(3개), 평가지표(7개), 세부 평가지표(26개), 평가기준(105개)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지표		가중치 (총100점)
1. 시설기준 적합성 (40점) (10개 지표)	1.음압격리 병동시설 (20점) (5개 지표)	1) 시설구성이 적절하고, 적정규격을 확보하였는가?	6
		2) 시설 내 공간배치는 적절한가?	4
		3) 의료진, 환자 및 폐기물 등의 동선이 적절하게 분리되었는가?	4
		4) 시설의 기밀성이 확보되었는가?	3
		5) 교차감염 억제장치를 적용하였는가?	3
	2.음압설비 등 운영 (20점) (5개 지표)	1) 음압격리구역의 급배기설비가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가?	6
		2) 음압격리구역 내 차압이 적절하게 유지되는가?	4
		3) 음압격리구역의 급배수 및 폐수처리설비가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가?	4
		4) 음압격리구역의 전기통신설비가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가?	3
		5) 음압격리구역의 자동제어설비가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가?	3
2. 근무인력 적정성 (30점) (6개 지표)	1.격리병상 전담인력 구성 및 운영 (15) (3개 지표)	1) 입원치료병상 운영조직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6
		2) 음압 및 일반 격리병상 수에 따른 적절한 의료진 운용계획이 마련되었는가?	6
		3) 운영조직의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관리하는가?	3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지표	가중치 (총100점)	
2.격리병상 전담인력 교육·훈련 등 역량관리 (15) (3개 지표)	1) 전담인력에 대해 격리병상운영 및 신종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적합한 교육을 시행하는가?	5	
	2) 병원 내 위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모의훈련을 시행하는가?	5	
	3) 전담인력의 위험도를 고려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는가?	5	
3. 진료 및 운영 (30점) (10개 지표)	1.환자 적정관리 (11) (4개 지표)	1) 적절한 환자처리절차(입퇴원, 검사, 이송, 사망)가 구비되어 있는가?	4
		2) 위기 시 음압격리병동 내 일반환자에 대한 조치 계획이 마련되었는가?	3
		3) 적절한 보호자 및 방문자 관리 방안이 마련되었는가?	2
		4) 환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는가?	2
	2.감염병관리장비 및 병실 관리 (11) (4개 지표)	1) 입원치료병동 내 적절한 감염예방물품을 사용하는가?	2
		2) 청소 및 소독을 위한 적절한 절차 및 방법이 마련되었는가?	2
		3) 격리병동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및 세탁물 처리방침이 마련되었는가?	3
		4) 상황별(평시, 감염병(의심)환자 입원 시, 화재 시 등) 격리시설운영방침이 마련되었는가 ?	4
	3.의료진 등 감염예방 관리 (8) (2개 지표)	1) 의료기관 직원 감염관리계획이 수립되었는가?	4
		2)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병원체 노출자 관리체계가 마련되었는가?	4

■ 평가 가점 항목 (5점)

- 다제내성균(6종) 관리 신고 여부 : 2점
- 국가지정입원치료 적용대상 감염병 입원치료실적 : 3점

- ‘지역별 거점병원’ 및 ‘일반지정병원’ 적용 평가지표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평가지표를 준용하여 2017년 개발 예정

평가방법

- (서면평가)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기관의 제출자료를 평가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5점 척도 점수로 산출
- (방문평가) 서면평가 실시 후 추가적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시

평가결과 활용

-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및 기술자문 지원을 통해 감염병관리시설 수준 상향 유도
-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운영비 차등 지원

3 2017년 시범평가 안내



시행주체

- 평가기관 : 질병관리본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질병관리본부 평가업무의 행정적지원을 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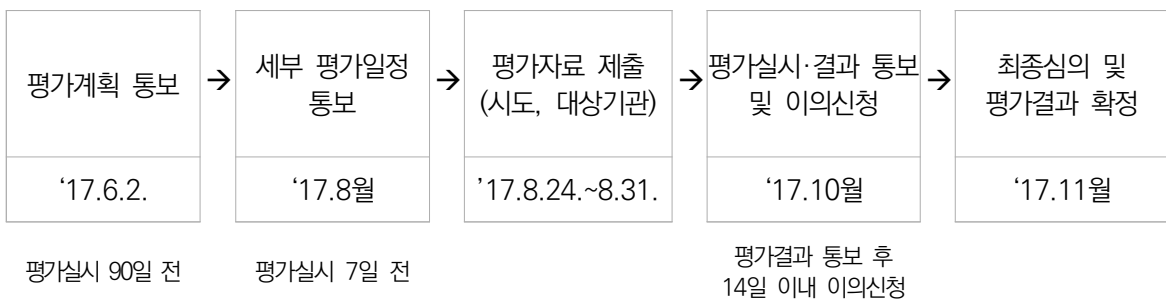
평가대상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 29개소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는 의료기관 제출 자료 검토 및 평가 후, 평가위원별 점수를 취합하여 평가결과를 3그룹으로 구분함.
- 평가기관은 기관별 평가결과를 통보하며, 해당 기관장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수행절차 및 일정



행정사항

- 평가는 의료기관별 제출자료를 근거로 실시하며, 제출자료 누락 시 해당 지표에 대해 최하점 처리함
- 제출자료는 소속 시·도청 담당부서 취합 후 공문 제출('17.8.24.~8.31.)
- 제출자료
 - ① 의료기관 제출 공문
 - ② 2017년도 감염병관리시설 평가표 (자체평가는 작성하되, 평가척도 점수는 기록하지 않아도 무방함)
 - 각 지표별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근거자료 제출 여부(예, 아니오)에 표기하고, 제출자료 및 페이지에 근거자료를 기술해야 함
 - ③ 평가 근거자료
 - 음압격리병동 구역 도면 : 실시설계도면, 준공도면, 배치도, 각 층 평면도, 실별 면적표, 가구 및 장비 배치도, 단면도 등
 - 시설설비검증 보고서 : 시설 및 설비점검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정상가동 점검표*, TAB 보고서 등
 -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 내 수록된 서식 참조
 - '17년도 운영계획서, 교육실시결과보고서(2016년), 훈련실시결과 보고서(2016년), 사진자료 등 기타 평가지표별 증빙 가능한 자료
 - 지표 [2-2-3, 3-1-4, 3-2-1, 3-2-4] 관련 내용은 추가 증빙자료 서식 <서식 1~4>(p78) 을 활용하여 작성 후 운영계획서 부분에 첨부
- 제출처
 - 질병관리본부(자원관리과)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에 전자문서 공문으로 제출
 - 대용량 파일 등 공문 첨부 불가시, 질병관리본부(jksdh77@korea.kr)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eoc2016@khealth.or.kr)에 별도 발송(공문접수 확인 후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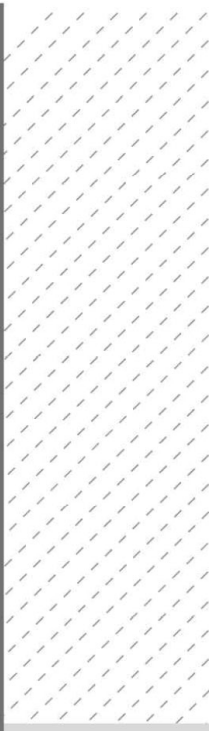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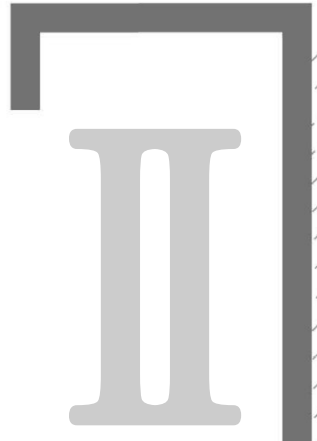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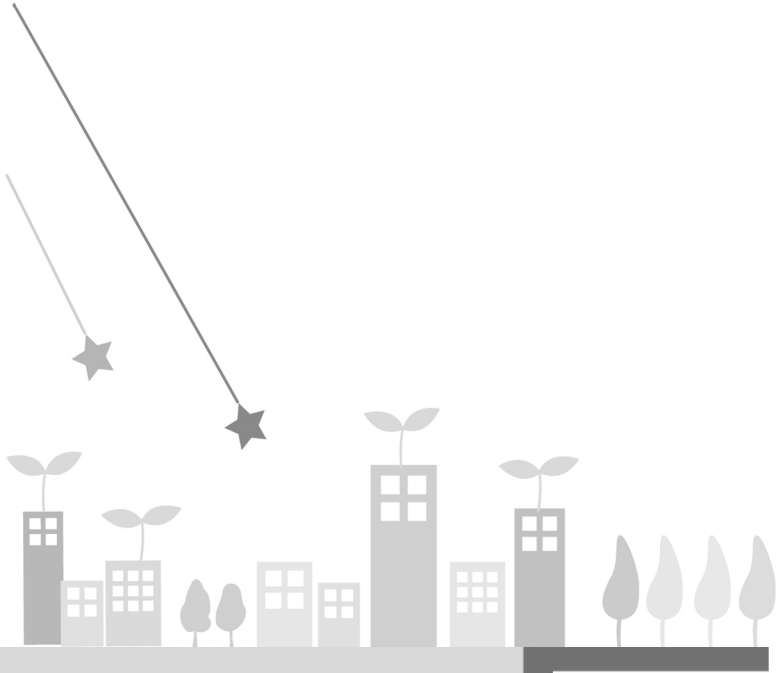
○ 문의사항

-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

- 김동훈 주무관 (043-719-7243, jksdh77@korea.kr)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감염병위기대응사업팀

- 현정희 팀장 (02-3781-2250, hyun@khealth.or.kr)
- 권승휘 연구원 (02-3781-2251, kwon@khealth.or.kr)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지표**

1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지표(총괄)



대상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017년도 시범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서면평가시 필요서류
1. 시설기준 적합성 (40)	1. 음압격리 병동시설 (20)	1) 시설구성이 적절하고, 적정규격을 확보하였는가? (6)	도면, 시설설비검증 보고서, 증빙자료 (사진 등)
		2) 시설 내 공간배치는 적절한가? (4)	
		3) 의료진, 환자 및 폐기물 등의 동선이 적절하게 분리되었는가? (4)	
		4) 시설의 기밀성이 확보되었는가? (3)	
		5) 교차감염 억제장치를 적용하였는가? (3)	
	2. 음압설비 등 운영(20)	1) 음압격리구역의 급배기설비가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가? (6)	
		2) 음압격리구역 내 차압이 적절하게 유지되는가? (4)	
		3) 음압격리구역의 급배수 및 폐수처리 설비가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가? (4)	
		4) 음압격리구역의 전기통신설비가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가? (3)	
		5) 음압격리구역의 자동제어설비가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가? (3)	
2. 근무인력 적정성 (30)	1. 격리병상 전담인력 구성 및 운영(15)	1) 입원치료병상 운영조직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6)	운영계획서
		2) 격리병상 수에 따른 적절한 의료진 운용계획이 마련되었는가? (6)	운영계획서
		3) 운영조직의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관리하는가? (3)	운영계획서
	2. 격리병상 전담인력 교육·훈련 등 역량관리(15)	1) 전담인력 대상 병상운영 및 신종감염병 대응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가? (5)	교육실시 결과보고서
		2) 병원 내 위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모의훈련을 시행하는가? (5)	훈련실시 결과보고서
		3) 전담인력의 위험도를 고려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는가? (5)	증빙자료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서면평가시 필요서류
3. 진료 및 운영 (30점)	1. 환자 걱정관리 (11)	1) 적절한 환자처리 절차(입퇴원, 검사, 이송, 사망)가 구비되어 있는가? (4)	운영계획서
		2) 위기 시 음압격리병동 내 일반환자에 대한 조치계획이 마련되었는가? (3)	운영계획서
		3) 적절한 보호자 및 방문자 관리 방안이 마련되었는가? (2)	운영계획서
		4) 환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는가? (2)	증빙 자료
	2. 감염병관리장비 및 병실 관리 (11)	1) 입원치료병동 내 적절한 감염예방물품을 사용하는가? (2)	증빙 자료
		2) 청소 및 소독을 위한 적절한 절차 및 방법이 마련되었는가? (2)	운영계획서
		3) 격리병동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및 세탁물 처리방침이 마련되었는가? (3)	운영계획서
		4) 상황별(평시, 감염병(의심)환자 입원 시, 화재 시 등) 격리시설운영방침이 마련되었는가 ?	증빙 자료
	3. 의료진 등 감염예방 관리 (8)	1) 의료기관 직원 감염관리계획이 수립되었는가? (4)	운영계획서
		2)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병원체 노출자 관리체계가 마련되었는가? (4)	

- 평가 가점 항목 (5점)
 - 다제내성균(6종) 관리 신고 여부 : 2점
 - 국가지정입원치료 적용대상 감염병 입원치료 실적 : 3점

2 평가지표별 평가기준



📦 시설기준 적합성(10개 지표, 40점)

○ 음압격리병동 시설(5개 지표, 20점)

- 평가지표 1-1-1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1-1-1	시설구성이 적절하고, 적정규격을 확보하였는가?	6점
평가기준	<p>가. 1인병실(병실 유효면적* 15㎡ 이상, 외부조망 확보, 벽면 요철 최소화) - 유효면적 : 전실, 화장실, 벽체 등을 제외한 순수 유효면적(15년 이전 설치 시설의 경우, 설치 당시 지침을 준용한다.)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1호가목(별표4의2) - 1인병실 유효면적은 18㎡ 이상을 권장한다</p> <p>나. 직접 진입 가능한 병실 내부 부속화장실 설치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다. 병실과 내부복도의 전실(유효면적 4㎡ 이상, 깊이 2.4m 이상, 출입문 유효폭 1.2m 이상)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권장)</p> <p>라. 감염병동전용 간호스테이션 설치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 - 간호스테이션에서 음압격리병동 복도 관찰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p> <p>마. 착탈의실 및 샤워실 설치(15년 이전 설치 시설 중 공간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설치 불가할 경우, 위기시를 대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 - 탈의실 내 의료진 등이 개인보호구 탈의 전 제독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과 제독장비 구비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권장)</p> <p>바. 장비보관실(15년 이전 설치 시설 중 공간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설치 불가할 경우, 위기시를 대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사. 폐기물처리실(15년 이전 설치 시설 중 공간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설치 불가할 경우, 위기시를 대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아. 실내 천정고 2.4m 이상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기준설명	가-1 의료진의 진료활동, 의료기기의 사용, 환자용 가구 및 비품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1인 병실의 넓이는 전실, 화장실, 벽체 등을 제외한 순수 유효면적(순면적)을 기준으로 15㎡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18㎡이상 설치를 권장함	

	<p>가-2 중증 감염환자 치료를 위한 병실을 계획할 경우 1인 중환자 병실에 적합한 병상 주변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설비를 구비함</p> <p>가-3 환자의 병실 내에서 외부로의 적절한 조망을 확보함</p> <p>가-4 병실 내 집기는 최대한 벽걸이식으로 하여 바닥의 오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함</p> <p>가-5 환자용 가구를 고정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붙박이식으로 하되 바닥 청소가 용이하도록 함</p> <hr/> <p>나-1 병실 내에는 별도의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며 전실을 통하지 않고 병실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함</p> <p>나-2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샤워공간을 확보하되 욕조는 설치하지 않음</p> <p>나-3 화장실에는 비접촉식 수전이 달린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세면대 및 설비 배관은 벽배관 형식을 권장함</p> <p>나-4 여닫이 문 설치 시 문의 개폐 방향은 병실방향으로 하여야 함</p> <p>나-5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물기에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함</p> <p>나-6 화장실 또는 샤워실에서 사용한 물이 병실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바닥구배를 둠</p> <hr/> <p>다-1 병실전실의 면적은 환자 침대의 이동을 고려하여 면적 4㎡ 이상, 깊이 2.4m 이상을 권장함</p> <p>다-2 병실전실은 음압구역 내 병실과 내부복도 사이에 위치해야 함</p> <p>다-3 병실전실 내에는 자동 수전이 달린 세면대 설치 시 벽배관 형식 설비배관을 권장함</p> <p>다-4 환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함</p> <p>다-5 환자 침대 이동 시 복도전실 양쪽 출입문 인터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면적 4㎡, 깊이 2.4m 이상을 권장함</p> <hr/> <p>라-1 간호스테이션은 음압격리구역과 물리적으로 구획된 비음압구역으로, 병실 등 음압격리구역 내 제반 실에 대하여 차압 및 온습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알람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함</p> <p>라-2 간호스테이션에서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 환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병실 내 환자 및 의료진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함</p> <hr/> <p>마-1 음압격리구역 출구방향에 탈의실과 샤워실, 샤워 후 착의실을 설치함</p> <p>마-2 탈의실에는 전신거울을 설치하여 개인보호구 탈의 시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p> <p>마-3 탈의실은 오염된 개인보호구를 탈의하는 공간이므로 음압이 형성되도록 하며, 개인보호구 탈의 방식을 고려하여 충분한 넓이로 계획하여야 함</p> <p>마-4 탈의실 내에는 탈의한 개인보호구(PPE) 폐기를 위한 전용 폐기물용기를 구비함</p> <p>마-5 필요 시 개인보호구 탈의 전, 제독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의 제독실을 별도 구비하거나 기존 탈의실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p> <hr/> <p>바-1 음압격리구역 내에 격리입원환자 전용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장비보관실을 마련하여야 하고, 인접 격실보다 양압으로 설정함</p> <hr/> <p>사-1 입원환자 치료 중 발생한 폐기물의 일시 보관을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안전한 반출이 가능한 위치로 배치함</p> <p>사-2 멸균기(오토클레이브) 설치를 권장함</p> <p>사-3 의료진 동선과 독립된 폐기물 반출 동선을 권장함</p> <hr/> <p>아-1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의 모든 실의 천정은 2.4m 이상을 확보함</p>
평가자료	도면, 시설설비검증보고서(운영규정 제12조), 증빙자료(사진 등)

📦 시설기준 적합성(10개 지표, 40점)

○ 음압격리병동 시설(5개 지표, 20점)

- 평가지표 1-1-2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1-1-2	시설 내 공간배치는 적절한가?	4점
평가기준	<p>가. 음압격리구역 내부시설(병실, 내부복도, 장비보관실, 폐기물처리실 등) 공간배치 적절성</p> <p>나. 음압격리구역 진출입시설(복도전실, 착탈의실, 샤워실 등) 공간배치 적절성</p> <p>다. 비음압구역의 지원시설(간호스테이션, 휴게실, PPE보관실 등) 공간배치 적절성</p> <p>라. 간호스테이션의 환자관찰 용이성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마. 병실 출입문에 관찰창(0.72㎡) 설치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기준설명	<p>가-1 음압격리구역내 필요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자진료에 적합하도록 내부 공간이 배치되어 있음</p> <p>가-2 음압격리구역내 필요시설은 음압병실, 병실전실, 내부복도, 폐기물처리실, 장비보관실, (제독실, 검사실) 등임 ※ () 내 시설은 권장사항임</p> <p>나-1 음압격리구역 진출입 시설에는 복도전실, 보호복 탈의실, 샤워실, 착의실 등이 있음.</p> <p>나-2 의료진이 환자진료 후 퇴실하는 순서에 따라 (제독실), 보호복 탈의실, 샤워실, 착의실의 순서로 공간이 배치되고, 실내압력도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높아짐. 이때, 착의실의 압력은 주변 대기압과 같을 수 있음 ※ () 내 시설은 권장사항임</p> <p>다-1 비음압구역에는 간호스테이션, PPE 보관실, PPE 착의실, (휴게실, 당직실, 화장실) 등이 구비되어 있음 ※ () 내 시설은 권장사항임</p> <p>라-1 간호스테이션은 격리음압병실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관찰(CCTV등을 이용한 관찰)이 용이함.</p> <p>마-1 내부음압복도에서 음압병실에 대한 직접관찰이 용이하도록 음압병실 및 병실전실 출입문(또는 병실 벽)에 관찰창을 설치함.</p> <p>마-2 음압구역 내 음압병실 및 전실 출입문에 강화유리문(12mm 이상) 또는 관찰창(0.72㎡ 이상) 등을 설치하여 내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함</p>	
평가자료	도면, 시설설비검증보고서(운영규정 제12조), 증빙자료(사진 등)	

■ 시설기준 적합성(10개 지표, 40점)

○ 음압격리병동 시설(5개 지표, 20점)

- 평가지표 1-1-3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1-1-3	의료진, 환자 및 폐기물 등의 동선이 적절하게 분리되었는가?	4점
평가기준	<p>가. 의료진과 환자의 음압격리구역 진출입 동선 분리('15년 이전 설치 시설 중 공간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분리가 불가한 경우, 위기시를 대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나. 의료진 진출입 동선 분리(착탈의실 구분 설치)('15년 이전 설치 시설 중 공간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분리가 불가한 경우, 위기시를 대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다. 공급품 및 폐기물 동선 분리('15년 이전 설치 시설 중 공간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분리가 불가한 경우, 위기시를 대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권장)</p>	
기준설명	<p>가-1 입원환자 동선과 의료진 동선이 분리되어 있음. 이때 입원환자 동선과 폐기물 반출 동선은 공유할 수 있음</p> <p>가-2 음압격리구역이 고층에 위치한 경우 환자 입원을 위한 별도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음. 그렇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심)환자를 외부에서부터 안전하게 음압격리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음압 스트레처 등의 장비 및 표준작업절차(SOP)가 구축되어야 함</p> <p>나-1 환자진료 등을 위해 음압격리병실에 들어가는 동선과, 비음압구역으로 나오는 동선이 분리되어 있어야 함.</p> <p>나-2 환자진료 등을 위해 음압격리구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PPE 착의실→복도전실→내부복도→병실전실→음압병실 등의 공간을 순차적으로 거침. 다만 병원에 따라 일부 동선이 조정될 수 있음</p> <p>나-3 환자진료 후 의료진이 음압격리구역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음압병실→병실전실→내부복도→(제독실)→탈의실→사위실→착의실→일반구역 등을 순차적으로 거치는 동선체계를 따름. 다만 병원에 따라 일부 동선이 조정될 수 있음.</p> <p>다-1 공급품 및 폐기물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각각의 동선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음</p> <p>다-2 예를 들어 병실로 공급되는 물품의 동선은 일반구역→복도전실(pass box)→내부복도→병실전실→음압병실 등의 순서로 이루어짐. 다만 병원에 따라 일부 동선이 조정될 수 있음</p> <p>다-3 음압병실에서 사용(진료)후 폐기되는 물품의 동선은 음압병실→병실전실→내부복도→(폐기물 보관실)→폐기물처리실→(오토클레이브)→폐기물 보관실→외부반출 등의 순서로 이루어짐. 다만 병원에 따라 일부 동선이 조정될 수 있음</p>	
평가자료	도면, 시설설비검증보고서(운영규정 제12조), 증빙자료(사진 등)	

📦 시설기준 적합성(10개 지표, 40점)

○ 음압격리병동 시설(5개 지표, 20점)

- 평가지표 1-1-4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1-1-4	시설의 기밀성이 확보되었는가?	3점
평가기준	<p>가. 바닥과 벽, 벽과 천장, 벽체 패널 등 조인트 및 창호의 기밀성 확보 및 누기 최소화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나. 전등, 콘센트, 의료장비용 콘솔, 배관 등 시설 내 부착물 및 설치물의 기밀 시공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다. 벽체, 바닥, 천장의 모서리 부분을 둥근 형태(rounding)로 처리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라. 내구성 및 내화학성, 항균성이 있는 재료 사용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기준설명	<p>가-1 모든 실내 재료는 음압유지를 위하여 밀폐능력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p> <p>가-2 음압격리구역 내 모든 벽체, 바닥, 천장은 공기의 이동 등 누기가 없도록 하고 벽체 이음새는 밀폐처리 함</p> <p>가-3 음압격리구역 내 모든 창문은 기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비상시에만 열리도록 함</p> <p>가-4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필요한 경우 청소가 용이하고 요철이 적은 구조로 함(내장형 블라인드 권장)</p> <p>가-5 밀봉을 위해 사용하는 실리콘은 항균성 실리콘으로 하여야 함</p> <p>나-1 콘센트, 스위치 등 부착기구와 각종 공조, 위생, 전기 배관이 공기의 이동경로가 되지 않도록 밀폐하여 기밀성을 유지하는 구조로 하여야 함</p> <p>나-2 밀봉을 위해 사용하는 실리콘은 항균성 실리콘으로 하여야 함</p> <p>다-1 바닥 재질을 이음새 없이 걸레받이 높이까지 말아 올리거나 모서리 이음새의 청소가 용이하도록 조치하여야 함</p> <p>다-2 천정 몰딩 사용 시 라운드 형태의 몰딩 사용을 권장함</p> <p>라-1 천장, 바닥, 벽 등 마감재료는 내구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강하여 멸균작업 시 화학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하기 쉬운 공법과 재료를 이용해야 함</p> <p>라-2 내구성, 내화학성, 항균성이 있는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함</p> <p>라-3 폐기물처리실, 보호복 탈의실 등 약액소독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의 바닥은 자기질 타일 등 내화학성이 강한 재질로 사용해야 함</p> <p>라-4 페인트 마감 시 항균 페인트 사용</p> <p>라-5 Steel Gypsum Panel(SGP)판넬 등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료의 사용과, Seamless joint 공법의 시공을 권장함</p> <p>라-6 음압격리 구역 내 흡음 텍스 등 오염물이 쉽게 부착되고 세척이 어려운 재질의 천정재 사용을 금지함</p> <p>라-7 밀봉을 위해 사용하는 실리콘은 항균성 실리콘으로 하여야 함</p>	
평가자료	도면, 시설설비검증보고서(운영규정 제12조), 증빙자료(사진 등)	

📌 시설기준 적합성(10개 지표, 40점)

○ 음압격리병동 시설(5개 지표, 20점)

- 평가지표 1-1-5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1-1-5	교차감염 억제장치를 적용하였는가?	3점
평가기준	<p>가. 전실(병실전실, 복도전실 등)의 인터락 구조 설치(비상시 해제 가능)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나. 비접촉식 자동 출입문(발 스위치, 근접작동(센서형) 스위치 적용) 설치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다. 비접촉식 수도꼭지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라. 세면기 등 위생시설의 벽 배관 형식 시공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권장)</p>	
기준설명	<p>가-1 정상운영 시 음압구역 내 병실전실과 복도전실의 양쪽 문은 동시에 열리지 않아야 함 가-2 음압구역 내에서 인접한 병실전실, 복도전실, 착·탈의실 내 양쪽문은 동시에 열리지 않는 구조 (인터락 구조)로 함 가-3 화재발생 등 비상시에는 수동 또는 자동으로 인터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함</p> <p>나-1 병실, 병실전실, 복도전실 등의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함 나-2 병실, 병실전실, 복도전실의 출입문은 비접촉식(발 스위치, 근접작동 (센서형))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불필요하게 개폐되지 않도록 함</p> <p>다-1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동 내 모든 세면기는 비접촉식 수도꼭지가 설치되어야 함 다-2 세면기 이외의 수도꼭지 설치 시 가급적 비접촉식 수도꼭지의 설치를 권장함</p> <p>라-1 위생배관은 벽배관 형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권장함 라-2 화장실내 배관 등 벽 및 바닥면의 요철을 최소화하여 세척과 소독을 용이하게 하여야 함</p>	
평가자료	도면, 시설설비검증보고서(운영규정 제12조), 증빙자료(사진 등)	

📦 시설기준 적합성(10개 지표, 40점)

○ 음압설비 등 운영(5개 지표, 20점)

- 평가지표 1-2-1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1-2-1	음압격리구역의 급배기설비가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가?	6점
평가기준	가. 다른 급배기시설과 구분된 음압격리구역 전용의 급배기시설 설치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	
	나. 각 실별 배기덕트에서 헤파필터 혹은 동급의 필터를 통해 단독으로 전량 외부 배출하고, 배기팬은 말단에 설치 ※ 각 실의 배기구마다 필터를 설치하거나 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한 경우, 필터 또는 댐퍼 후단부터 배기덕트 통합 배기 가능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	
	다. 배기팬 고장 시 자동으로 전환되는 예비용 배기팬 설치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	
	라. 급기구에 헤파필터가 없는 경우, 급기배관에 역류방지댐퍼 설치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	
	마. 음압병실과 전실의 환기횟수는 6회/시간 이상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 - 환기횟수 12회/시간 이상을 권장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권장)	
	바. 음압격리구역 내 팬코일 유닛이나 시스템 에어컨 등 재순환 냉방장치 미설치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	
	사. 입원환자 머리 근처에 배기구 설치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권장)	
	아. 배기구 말단은 타 공조시스템의 인입구, 개폐가능한 창호, 출입구 등에서 2m 이상 격리하여 설치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	
기준설명	가-1 기존 시설의 급배기시설(공조)과 분리된 별도의 음압격리구역 전용 급배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함 가-2 음압격리구역 전용의 급배기시설은 음압격리구역 지원을 위해 인접한 비음압구역(간호스테이션, 착의실 등)과도 분리되어야 함	
	나-1 실간 교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각 실별 배기구에 헤파필터가 설치되어야 하며, 헤파필터 이후 각 실별 분기된 덕트는 통합하여 말단의 배기유닛을 통해 옥외로 배출할 수 있음 나-2 헤파필터를 실별 배기구에 설치하지 않고 분기된 덕트마다 기밀형 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한 후 통합된 말단의 배기유닛에만 헤파필터를 설치할 수도 있으나 덕트 오염 등의 이유로 권장하지 않음	
	다-1 단독으로 운영 가능한 충분한 용량의 예비 배기팬을 기존 배기팬과 병렬로 설치함 다-2 기존 배기팬 고장 시 예비팬이 자동으로 가동되어 지속적인 음압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p>라-1 급기덕트를 통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실별 급기구에도 헤파필터 설치하거나 분기된 모든 덕트에 기밀형 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여야 함</p> <p>마-1 음압병실과 전실의 환기횟수는 급기량 기준으로 상시 6회/시간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12회/시간을 권장함</p> <p>마-2 위 환기횟수에는 헤파필터를 통한 각 실내 재순환 풍량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기 도입량은 2회/시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p> <p>바-1 음압격리구역 내에는 팬코일 유닛이나 시스템 에어컨 등 미생물 오염의 우려가 있는 재순환 냉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p> <p>사-1 환자로부터의 미생물 오염원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격리환자의 호흡기(머리) 근처에 배기구를 위치하는 것을 권장함</p> <p>아-1 오동작, 고장, 손상 등에 의해 음압격리구역으로부터의 배기에 미생물 오염원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옥상 배기구 근처에는 타 공조장치의 외기 도입구, 개폐가능한 창호, 출입구가 없도록 함</p> <p>아-2 최소 2m 이상(가능한 8m 이상) 이격하고 배기구 방향을 90도 이상 틀어 설치하도록 함</p>
평가자료	도면, 시설설비검증보고서(운영규정 제12조), 증빙자료(사진 등)

📦 시설기준 적합성(10개 지표, 40점)

○ 음압설비 등 운영(5개 지표, 20점)

- 평가지표 1-2-2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1-2-2	음압격리구역 내 차압이 적절하게 유지되는가?	4점
평가기준	<p>가. 음압격리구역 내 각 실 간 음압차가 -2.5pa 이상 유지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나. 일반구역에서 오염구역으로 공기가 흐르도록 단계적 차압 설정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 - 음압구역 내 각 실별 표준 차압을 제시할 것을 권장</p> <p>다. 음압구역 내 차압 모니터링을 위한 차압계 및 차압표시기 설치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라. 음압 수치 이상 시 비상알람 작동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기준설명	<p>가-1 음압격리구역 내 실간 및 음압격리구역과 비음압구역간 음압차는 -2.5Pa 이상을 유지하도록 함.</p> <p>나-1 실간 차압을 이용하여 덜 오염된 곳에서 더 오염된 곳으로 공기가 흐르도록 설정하여야 함. 예) 일반구역>복도전실>내부복도>병실전실>음압병실>병실화장실</p> <p>다-1 음압구역 내 차압이 형성된 모든 실간에는 차압 모니터링을 위한 차압계 및 차압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함. 이 때 차압표시기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되어야 하며, 충분한 실간 차압을 확보한 경우(4Pa 이상) 1Pa 단위까지 표시되는 차압표시기를 설치할 수 있음 (음압병실과 병실화장실간 차압표시기 설치 불필요)</p> <p>라-1 차압계로부터의 차압은 중앙제어시스템으로 보내져 이상 시 경광등 및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되어야 함</p>	
평가자료	도면, 시설설비검증보고서(운영규정 제12조), 증빙자료(사진 등)	

❏ 시설기준 적합성(10개 지표, 40점)

○ 음압설비 등 운영(5개 지표, 20점)

- 평가지표 1-2-3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1-2-3	음압격리구역의 급배수 및 폐수처리설비가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가?	4점
평가기준	<p>가. 음압격리구역 내 급배수 배관 및 통기관에 역류방지장치 설치 - 실별 개별 급탕설비를 갖출 경우, 급탕용 배관에 대해 역류방지장치 예외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나. 음압격리구역의 배수관은 전용 폐수저장탱크까지 단독 설치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권장)</p> <p>다. 음압격리구역의 폐수는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에서 살균 또는 멸균하여 처리 후 원내 폐수처리설비에 합류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라. 미생물 비활성화를 위한 설비 및 BI(Biological Indicator) test 검증포트 설치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마. 폐수저장탱크 통기관 설치 및 통기관 말단에 제균필터 설치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기준설명	<p>나-1 음압격리구역의 배수관은 전용 폐수저장탱크까지 단독계통으로 독립되어 설치되며 다른 배관과 연결되지 않아야 함(전용 멸균기가 설치된 경우 멸균기 응축수가 전용 폐수저장탱크로 배출되어야 함)</p> <p>다-1 음압격리구역의 폐수는 별도의 폐수처리시설 (화학적 혹은 열처리 시 적합 여부 확인)이 설치되어야 함</p> <p>다-2 살균 또는 멸균하여 처리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함</p>	
평가자료	도면, 시설설비검증보고서(운영규정 제12조), 증빙자료(사진 등)	

📦 시설기준 적합성(10개 지표, 40점)

○ 음압설비 등 운영(5개 지표, 20점)

- 평가지표 1-2-4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1-2-4	음압격리구역의 전기통신설비가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가?	3점
평가기준	<p>가. 음압격리병실 내 국부조도가 500Lux 이상이며, 기밀구조인 조명기구 사용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나. 화상전화, 무선통신기기 등으로 면회 또는 의료용 통신 가능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다. 병동 및 병실 관찰용 CCTV 설치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라. 비상발전기 및 UPS설비 연결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기준설명	<p>가. 음압격리병실 내 국부조도의 실측값을 TAB보고서로 확인하고, 기밀구조인 조명기구를 사용하여 함</p> <p>나. 화상전화, 무선통신기기 등으로 환자의 화상진료 및 면회 또는 간호사실과 연락할 수 있는 의료용 통신이 가능하여야 함 (격리가 된 상태에서 필요한 경우 소통이 가능하여야 함)</p> <p>다. 병동 및 병실 관찰용 CCTV 설치하여 환자의 상태 및 출입자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p> <p>라. 비상발전기 및 UPS설비 설치여부와 정전이 되더라도 배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p>	
평가자료	도면, 시설설비검증보고서(운영규정 제12조), 증빙자료(사진 등)	

❏ 시설기준 적합성(10개 지표, 40점)

○ 음압설비 등 운영(5개 지표, 20점)

- 평가지표 1-2-5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1-2-5	음압격리구역의 자동제어설비가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가?	3점
평가기준	<p>가. 배기시스템 정지 시 급기시스템 자동 정지(급배기시스템 연동)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나. 음압격리시설 오작동* 시 비상경보가 작동되며, 관련 기록 저장 * 오작동 : 음압기준치 미달, 온습도 수치 이상 등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다. 음압격리구역의 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고 온습도, 차압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 - 간호스테이션과 중앙관제실에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라. 음압시설 및 설비의 주기적 점검 실시 - 매년 1회 이상 시설설비검증 및 TAB test 실시 * 근거 : 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9조</p>	
기준설명	<p>가-1 배기시스템 정지 시 음압격리구역이 양압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급기시스템이 정지하도록 연동되어야 함</p> <p>나-1 음압 이상이나 배기시스템 정지 등 오작동 시 비상경보가 작동되며 관련 기록이 중앙제어시스템에 자동저장되어 추후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p> <p>라-1 음압격리구역에 대하여 일상점검(음압, 온습도 등)과 정기점검 (공조기, 헤파필터 혹은 동급 이상의 필터유닛, 위생배관, 오폐수처리 설비, 비상전력 등)을 실시하고 이를 기록·보관하여야 함 라-2 매년 1회 이상 시설설비의 검증 및 TAB 테스트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보관하여야 함</p>	
평가자료	도면, 시설설비검증보고서(운영규정 제12조), 증빙자료(사진 등)	

📦 근무인력 적정성(6개 지표, 30점)

○ 격리병상 전담인력 구성 및 운영(3개 지표, 15점)

- 평가지표 2-1-1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2-1-1	입원치료병상 운영조직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6점
평가기준	<p>가. 입원치료병상 운영팀 및 감염관리위원회가 병원 내 별도조직으로 추가된 조직도 제시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나. 환자진료, 감염관리, 행정지원, 진료지원, 등 업무별 대응조직 구성 * 근거 : 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제1호</p> <p>다. 세부조직별 전담 인력 배치 여부</p> <p>라. 대응조직별 구성원 및 역할 지정 명시</p> <p>마. 원내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및 연 1회 이상 음압격리병동 관련 운영실적 확인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바. 감염전문인력* 보유현황(평시 감염전문인력 수) * 감염내과·호흡기내과·소아과(감염)·중환자 전문의, 감염관리전담간호사 등</p>	
기준설명	<p>나-1 환자진료반(내과, 소아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간호부,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반, 행정지원반(총무과, 원무과), 진료지원반(운영지원팀 등), 시설운영반 등의 기능을 포함한 ‘입원치료병상 운영팀’을 구성·운영해야 함 (팀 구성 및 업무분장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p> <p>다-1 세부조직별(환자진료, 감염관리, 행정지원, 진료지원, 시설운영)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야 함 다-2 전담인력은 자료 작성 시점의 활용가능한 인력을 특정하여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p> <p>라-1 대응조직별(환자진료, 감염관리, 행정지원, 진료지원, 시설운영) 구성원 및 역할이 지정되어야 함 라-2 구성원별 역할 또는 업무분장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어야 함</p> <p>마-1 감염관리위원회 구성원 명단 확인(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구분)</p> <p>바-1 적절한 감염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함 (감염관리전담간호사 : 감염관리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바-2 다음 쪽 참조 : 의료법 시행규칙(시행2017.9.1.) 별표 8의2</p>	
평가자료	운영계획서(운영규정 제10조, 제12조), 사업실적보고서	

□ 의료법 시행규칙(시행 2017.9.1.) 제46조제1항관련(별표8의2)

[별표 8의2]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제46조제1항 관련)

1. 인력기준: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감염관리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 간호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배치기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배치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1) 의사

구분	100~ 300 병상	301~ 600 병상	601~ 900 병상	901~ 1,200 병상	1,201~ 1,500 병상	1,501~ 1,800 병상	1,801~ 2,100 병상	2,101~ 2,400 병상	2,401 병상 이상
의사	1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6명 이상	7명 이상	8명 이상	9명 이상

2) 간호사 및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구분	100~ 200 병상	201~ 400 병상	401~ 600 병상	601~ 800 병상	801~ 1,000 병상	1,000 ~ 1,200 병상	1,201 ~ 1,400 병상	1,401 ~ 1,600 병상	1,601 ~ 1,800 병상	1,801 ~ 2,000 병상	2,001 ~ 2,200 병상	2,201 ~ 2,400 병상	2,401 병상 이상
간호사	1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5명 이상	6명 이상	6명 이상	7명 이상	7명 이상
의료 기관의 장이 인정 하는 사람	1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5명 이상	6명 이상	6명 이상	7명 이상

나. 종합병원

구분	100~ 300 병상	301~ 600 병상	601~ 900 병상	901~ 1,200 병상	1,201~ 1,500 병상	1,501~ 1,800 병상	1,801~ 2,100 병상	2,101 병상 이상
의사	1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6명 이상	7명 이상	8명 이상
간호사	1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1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다. 병원

인력	150~300 병상	301~600 병상	601~900 병상	901~1,200 병상	1,201 병상 이상
의사	1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간호사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비 고

1. 위 표 제2호가목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401병상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배치기준상의 최소인력을 기준으로 간호사를 1명씩 늘려 배치하면서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1명씩 줄여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최소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2. 위 표 제2호나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601병상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배치기준상의 최소인력을 기준으로 간호사를 1명씩 늘려 배치하면서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1명씩 줄여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최소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 근무인력 적정성(6개 지표, 30점)

○ 격리병상 전담인력 구성 및 운영(3개 지표, 15점)

- 평가지표 2-1-2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2-1-2	음압 및 일반 격리병상 수에 따른 적절한 의료진 운용계획이 마련되었는가?	6점
평가기준	가. 격리병상 입원환자 수에 따른 의료진 운용계획 수립 나. 감염환자 진료시 협진체계 마련 다. 결원 발생 등 의료진 부족 상황 시 의료진 동원계획 마련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	
기준설명	가-1 환자진료반의 경우, 감염내과를 중심으로 관련 진료과의 전담 인력을 사전에 구성하고 인력의 수는 근무교대(1일 최소 2교대)를 고려하여 확보 가-2 환자가 급증할 경우를 고려한 추가적, 장기적 인력 배치 계획 수립 나-1 감염병환자의 연령 및 기저질환에 따른 관련 과와의 협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다-1 근무의료인 중에서 유사증상자 발생으로 인한 결원을 고려하여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평가자료	운영계획서(운영규정 제10조, 제12조), 사업실적보고서	

📦 근무인력 적정성(6개 지표, 30점)

○ 격리병상 전담인력 구성 및 운영(3개 지표, 15점)

- 평가지표 2-1-3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2-1-3	운영조직의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관리하는가?	3점
평가기준	가. 전담인력 비상연락망 구축 * 근거 : 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제2호 나. 연락불가 시 대처방안 제시 * 근거 : 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제2호	
평가자료	운영계획서(운영규정 제10조, 제12조), 사업실적보고서	

📌 근무인력 적정성(6개 지표, 30점)

○ 격리병상 전담인력 교육·훈련 등 역량관리(3개 지표, 15점)

- 평가지표 2-2-1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2-2-1	전담인력에 대해 격리병상운영 및 신종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적합한 교육을 시행하는가?	5점
평가기준	가. 건강교육 및 감염관리를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 나. 직무와 관련된 질병별 개인보호구 선택 및 착용의 교육 실시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 다. 신종감염병에 대한 역학적 특성 및 감염관리방법 교육 실시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 라. 병원체 노출 및 감염에 대한 사후조치 관련 교육 실시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	
기준설명	공통-1 년 1회 이상(총 8시간 이상) 감염예방관리 교육 수행 공통-2 환자진료반과 감염관리반을 제외한 인력은 담당 업무에 따라 교육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전담인력이 자체교육과 외부교육 중 해당 교육의 1회기 당 평가기준 가, 나, 다, 라의 내용이 들어간 교육을 이수했다면 모두 완료된 것으로 인정	
평가자료	교육실시결과보고서(운영규정 제12조) ※ 자체 및 외부 교육 참여 포함, 교육 실시횟수, 교육자료, 일시, 장소, 강사, 대상, 방명록, 참여자수 등 포함	

📦 근무인력 적정성(6개 지표, 30점)

○ 격리병상 전담인력 교육·훈련 등 역량관리(3개 지표, 15점)

- 평가지표 2-2-2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2-2-2	병원 내 위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모의훈련을 시행하는가?	5점
평가기준	가. 신종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연 1회 이상 실시 * 근거 : 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10조제3항 나. 훈련 대상 감염병 환자 입원·격리·치료과정이 포함된 훈련프로그램 제시 다. 훈련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확인 및 조치결과	
기준설명	가-1 신종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에 대한 일시, 장소, 대상, 방명록 등 훈련 실시에 대한 증빙이 가능해야 함 다-1 모의훈련을 통해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훈련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확인 및 조치결과에 대해 기술되어 있어야 함	
평가자료	훈련실시결과보고서(운영규정 제12조)	

📌 근무인력 적정성(6개 지표, 30점)

○ 격리병상 전담인력 교육·훈련 등 역량관리(3개 지표, 15점)

- 평가지표 2-2-3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2-2-3	전담인력의 위험도를 고려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는가?	5점
평가기준	<p>가. 정기적인 신체검사 및 계절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시행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관리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다. 신종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당직비, 위험수당 등 보상체계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라. 격리가 필요한 전담인력이 거처할 수 있는 거주공간 제공 계획 수립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기준설명	<p>라-1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적용대상 감염병* 환자의 진료나 간호, 처치로 인한 전담인력의 격리가 필요한 상황 발생시 거처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함.</p> <p>* 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시행 2016.12.30.) 제6조(적용대상 감염병) :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SARS), 중동호흡기중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nimal Influenza, AI), 신종인플루엔자(Pandemic Influenza, PI), 신종감염병중후군, 생물테러감염병 및 질병관리본부장이 격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p>	
평가자료	증빙자료(지침 내 서식 활용)	

📦 진료 및 운영(10개 지표, 30점)

○ 환자 적정관리(4개 지표, 11점)

- 평가지표 3-1-1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3-1-1	적절한 환자처리절차(입퇴원, 검사, 이송, 사망)가 구비되어 있는가?	4점
평가기준	가. 확진(의심)환자 입원 절차 및 동선 * 근거 : 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제4호	
	나. 확진(의심)환자 병원 내 검사 절차 및 동선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권장)	
	다. 확진(의심)환자 이송 시 절차 및 동선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권장)	
	라. 확진(의심)환자 사망 시 절차 및 동선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권장)	
	마. 환자 완치 후 퇴원 절차 및 동선 * 근거 : 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제4호	
평가자료	운영계획서(운영규정 제10조, 제12조), 사업실적보고서	

📖 진료 및 운영(10개 지표, 30점)

○ 환자 적정관리(4개 지표, 11점)

- 평가지표 3-1-2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3-1-2	위기상황 발생 시 음압격리병동 내 일반환자에 대한 조치계획이 마련되었는가?	3점
평가기준	<p>가. 음압격리병동 내 일반환자가 4시간 이내 전동완료 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 여부 * 근거 : 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제5호</p> <p>나. 의심환자 입원 시 병실 간 교차오염을 감안한 환자 입원 계획 수립 여부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권장)</p>	
기준설명	<p>가-1 위기 시* 음압격리병동 내 일반환자가 4시간 이내 전동완료 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함</p> <p>* 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시행 2016.12.30.) 제2조(정의) : ‘위기 시’란 감염병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 수준의 ‘주의’ 단계 이상</p>	
평가자료	운영계획서(운영규정 제10조, 제12조), 사업실적보고서	

진료 및 운영(10개 지표, 30점)

○ 환자 적정관리(4개 지표, 11점)

- 평가지표 3-1-3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3-1-3	적절한 보호자 및 방문자 관리 방안이 마련되었는가?	2점
평가기준	<p>가. 보호자 및 방문자 관리규정 수립 * 근거 : 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제8호</p> <p>나. 보호자 및 방문자 대상 감염예방교육 자료 또는 계획 보유 여부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다. 격리구역 출입대장 기록 및 보관 실시 여부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기준설명	<p>가-1 보호자나 방문객의 격리병상 내 출입을 원칙으로 금하며, 정해진 면회 장소에서 화상통화 등을 통하여 면회하는 것을 권고함</p> <p>가-2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부득이 환자 방문을 허용할 경우, 감염예방주의 교육과 능동감시를 시행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시켜 의료진의 지도·감독 하에 방문을 시행함</p> <p>나-1 출입금지에 대한 사전 안내 자료와 음압병실 출입자에 대한 감염예방주의, 보호복 착용의, 능동적 감시, 접촉자 관리대장 작성 등의 교육 자료를 구비함</p> <p>나-2 보호자 및 방문자의 면회 시간, 진출입 동선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p> <p>다-1 위기 시 격리구역 출입대장 기록 및 보관(1년 이상)을 실시해야 함</p>	
평가자료	운영계획서(운영규정 제10조, 제12조), 사업실적보고서	

진료 및 운영(10개 지표, 30점)

○ 환자 적정관리(4개 지표, 11점)

- 평가지표 3-1-4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3-1-4	환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는가?	2점
평가기준	가. 환자-의료진 의사소통 방안 마련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권장) 나. 환자-보호자 의사소통 방안 마련 다. 외국인 의심 환자 대응을 위한 통역지원 계획 구비 여부	
기준설명	가-1 병실 내 환자와 의료진 간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통신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나-1 병실 내 환자와 보호자 간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통신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다-1 외국인 의심 환자에 대한 자체 통역지원 계획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다-2 다음 쪽 참조 : 통역서비스 관련 참고자료	
평가자료	증빙자료(지침 내 서식 활용)	

□ 통역서비스 관련 참고자료(질병관리본부)

○ 메르스대응지침[제5판]에 따른 자체적인 통역서비스 이용 방법

- 외국인 의심환자대응시 참고사항

〈 외국인 의심환자 대응 시 참고사항 〉

- * 외국인 메르스 의심환자 격리입원 지원 사항
 - 영어/아랍어 안내문 이용
 - 중동지역 국가의 경우 대사관 핫라인 이용
 - * 그 외 국가는 외교부 통해 해당 대사관 전파 및 협조
 - 통역 지원
 - 격리 의료기관이 3자 통화 또는 시간제 통역 고용 등을 통해 진료 시 통역비 지원
 - 환자당 20만원 이내의 통역비를 격리치료 항목에 포함해 청구 허용
 - (무슬림의 경우) 할랄식 지원
 - 격리병원이 외부 할랄식 구매 시 비용 청구 허용(배송비 포함)
 - * 할랄식 식당 리스트(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게재)
 - 일회용품 지원
 -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운영비에서 의료기관당 연간 100만원 이내로 수건·세면도구 등 일회용 위생용품 비용 인정

- 통역서비스

구분	영사콜센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BBB코리아 (민간 자원봉사)
연락처	02-3210-0404	국번없이 1345 (해외에서 이용 시, 82-1345)	1588-5644
운영 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주간(09:00-18:00) - 한국어 포함 20개국 언어 야간(18:00-22:00)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안내	24시간 ※ 자원봉사로, 무응답 있을 수 있음
지원 방식	3자 통화		○ 어플리케이션 있음 ○ 3자 통화는 각 통신사에 서비스 신청 후 가능
이용 방법	2 외국어통역서비스 → 원하는 언어 번호 선택	연결 후 원하는 언어 번호 선택	연결 후 원하는 언어 번호 선택
지원 언어	1 영어 2 중국어 3 일본어 4 프랑스어 5 러시아어 6 스페인어	1 한국어 2 중국어 3 영어 4 베트남어 5 타이어 6 일본어 7 몽골어 8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9 프랑스어 10 벙골어 (방글라데시어)	11 우르두어 (파키스탄어) 12 러시아어 13 네팔어 14 크메르어 (캄보디아어) 15 미얀마어 16 독일어 17 스페인어 18 필리핀어 19 아랍어 20 싱할리어 (스리랑카)
			1 영어 2 일본어 3 중국어 4 프랑스어 5 스페인어 6 이탈리아어 7 러시아어 8 독일어 9 포르투갈어 10 아랍어 11 폴란드어 12 터키어 13 스웨덴어 14 태국어 15 베트남어 16 인도네시아어 17 몽골어 18 인도어 (힌디어) 19 말레이시아어

○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시 통역서비스 이용 안내 (이용 후 비용은 질병관리본부 부담)

- 단계별 통역서비스 제공 안내

- (신고단계) 사용자*가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요청시, 통역 진행
 - * 사용자 : 공항검역소, 1339, 민간병원, 보건소 등
- (의심환자 대응단계) 사용자*가 긴급상황실(043-719-7789, -7790)에 요청하면 통역 자문위원단과 3시간 통역서비스 이용
 - * 사용자 : 검역소, 보건소, 역학조사관, 격리병원 관계자 등

※ 대응 단계 구분

- (신고단계) 의심환자 발생 신고 접수 단계
 - 15분 이내 또는 30분 이내의 짧은 유선 통역 서비스 필요시
- (의심환자 대응단계) 의심환자 분류, 분류 후 격리병상 이송 등 의심환자 대응 단계
 - 1시간 이상의 유선 통역 서비스 이용 가능

진료 및 운영(10개 지표, 30점)

○ 감염병관리장비 및 병실 관리(4개 지표, 11점)

- 평가지표 3-2-1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3-2-1	입원치료병동 내 적절한 감염예방물품을 사용하는가?	2점
평가기준	<p>가. 탈의실 내 개인보호구 폐기 용기, 전신거울 등 배치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나. 병실전실 내 개인보호구 착용 점검 안내서, 전신거울, 손소독제, 격리의료폐기물 처리용 내피비닐 및 전용용기 등 배치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다. 음압격리병실 내 치료 시 일회용 또는 전용장비* 사용 유무 * 이동식 X-ray 장비, 청진기, 혈압계, 온도계 등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기준설명	<p>가-1 탈의실 내 격리 의료폐기물 박스와 같은 개인보호구 폐기 용기, 전신거울, 손소독제 등을 배치함</p> <p>나-1 병실전실 내 개인보호구 착용 점검 안내서, 전신거울, 손세정시설(손소독제), 격리 의료폐기물 처리용 내피비닐 및 전용용기 등을 구비하여야 함</p> <p>다-1 음압격리병실 내 치료 시 사용중인 일회용 또는 전용장비를 확인함</p>	
평가자료	증빙자료(지침 내 서식 활용)	

□ 진료 및 운영(10개 지표, 30점)

○ 감염병관리장비 및 병실 관리(4개 지표, 11점)

- 평가지표 3-2-2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3-2-2	청소 및 소독을 위한 적절한 절차 및 방법이 마련되었는가?	2점
평가기준	<p>가. 격리병동의 청소 및 소독 계획 마련 여부(위기발생 시, 격리환자 입원 중, 격리환자 퇴원 시, 위기 상황 종료 시) * 근거 : 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p> <p>나. 청소 및 소독 시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지침 마련 여부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권장)</p> <p>다. 격리병상 전담인력 중 소독 담당 인원 지정 및 관련업무 훈련 수료 여부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라. 격리병실, 화장실, 출입문, 의료장비 등에 대한 소독방법 마련 여부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권장)</p>	
기준설명	<p>가-1 상황에 따른 격리병동의 청소 및 소독 계획(훈련된 담당인력, 소독제, 소독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p> <p>나-1 소독 시 개인보호구(1회용 가운, 1회용 장갑, N95등급 이상의 마스크, 보호안경 또는 안면 보호구 등) 착용하여야 함</p> <p>다-1 격리병상 전담인력 중 소독 담당 인력을 지정하고, 소독 담당 인력은 관련업무 훈련을 이수하여야 함</p>	
평가자료	운영계획서(운영규정 제10조, 제12조), 사업실적보고서	

📦 진료 및 운영(10개 지표, 30점)

○ 감염병관리장비 및 병실 관리(4개 지표, 11점)

- 평가지표 3-2-3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3-2-3	격리병동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및 세탁물 처리방침이 마련되었는가?	3점
평가기준	<p>가. 격리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사용하며, 유출방지를 위한 내피비닐 사용 여부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나. 허가를 받은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한 처리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다. 멸균처리 여부에 따른 폐기물 처리 방침 마련 여부 * 근거 : 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제7호</p> <p>라. 격리병동에서 발생하는 세탁물 처리 지침 마련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권장)</p>	
기준설명	<p>나-1 허가를 받은 전문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함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문폐기물 처리업체</p> <p>다-1 격리의료폐기물 처리 절차는 고온고압 멸균처리 수행 여부에 따른 각각의 처리방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p>	
평가자료	운영계획서(운영규정 제10조, 제12조), 사업실적보고서	

진료 및 운영(10개 지표, 30점)

○ 감염병관리장비 및 병실 관리(4개 지표, 11점)

- 평가지표 3-2-4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3-2-4	상황별(평시, 감염병 (의심)환자 입원 시, 화재 시 등) 격리시설운영방침이 마련되었는가?	4점
평가기준	가. 평시 시설운영방침 * 근거 : 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7조제1항 나. 감염병 (의심)환자 입원 시 시설운영방침 * 근거 : 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7조제3항 다. 화재 시 시설운영방침 라. 정전 시 시설운영방침 마. 경보작동(음압 이상 등) 시 시설운영방침	
기준설명	가-1 최소 1개 이상의 음압병실(보유 음압병상의 20% 이상)을 대기병실로 유지하고, 위기 시를 대비하여 기존 음압격리구역 입원환자의 전동계획을 포함한 평시 시설운영방침이 있어야 함 다-1 화재 시를 대비하여 소화전 등 보조살수장치(음압격리병실 밖에 설치)를 설치함 다-2 음압격리구역의 모든 출입문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화재 발생 시 시설운영지침(대응체계)이 있어야 함 라-1 정전 시 비상전원을 이용하여 배기가 이루어지는 등의 시설운영방침이 있어야 함 마-1 일정 시간 이상 차압이 비정상일 때 알람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시설운영방침이 있어야 함	
평가자료	증빙자료(지침 내 서식 활용)	

진료 및 운영(10개 지표, 30점)

○ 의료진 등 감염예방 관리(2개 지표, 8점)

- 평가지표 3-3-1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3-3-1	의료기관 직원 감염관리계획이 수립되었는가?	4점
평가기준	<p>가. 직원 감염관리 계획의 충실성</p> <p>※ 포함내용</p> <p>①건강진단</p> <p>②건강교육 및 감염관리를 포함한 안전교육</p> <p>③예방접종 프로그램, 직무와 관련된 질병에 대한 대책</p> <p>④위험에 노출된 직원에 대한 사후대책</p> <p>⑤직무와 관련된 감염위험에 대한 상담</p> <p>⑥직원 건강관리기록 유지관리 등</p> <p>* 근거 : 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8조 및 지침</p> <hr/> <p>나. 확진환자 발생 시 관련정보(발생 일시, 원내 경유 이력 등) 병원 내 공유 방침 마련</p> <p>*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기준설명	나-1 의료기관내 추가 감염 등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병원 내 의료진에게 환자관련 정보(발생기관, 경유 이력 등)를 공유하는 체계가 있어야 함.	
평가자료	운영계획서(운영규정 제10조, 제12조), 사업실적보고서	

진료 및 운영(10개 지표, 30점)

○ 의료진 등 감염예방 관리(2개 지표, 8점)

- 평가지표 3-3-2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3-3-2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병원체 노출자 관리체계가 마련되었는가?	4점
평가기준	<p>가. 병원체에 노출된 의료인에 의한 2차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능동감시체계 운영방침 수립 여부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나. 병원체 노출자(감염병환자 입원실 출입자, 환자관리와 관련된 접촉자 등)에 대한 명단 작성·관리 여부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필수)</p> <p>다. 병원체 노출자 발생 시 대응지침 행동요령 구비 여부 * 근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7.2.)”(권장)</p>	
기준설명	<p>가-1 의료기관 종사자 중 노출자에 대해 능동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감시지원, 교육,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p> <p>다-1 직원 감염 노출시 보고체계 및 (전파경로에 따른)관리절차(병원체 노출자에 대한 명단 작성/관리, 노출자 교육, 능동감시체계, 처치, 진단검사 및 추적검사, 예방적 투약, 근무제한 조치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함.</p>	
평가자료	운영계획서(운영규정 제10조, 제12조), 사업실적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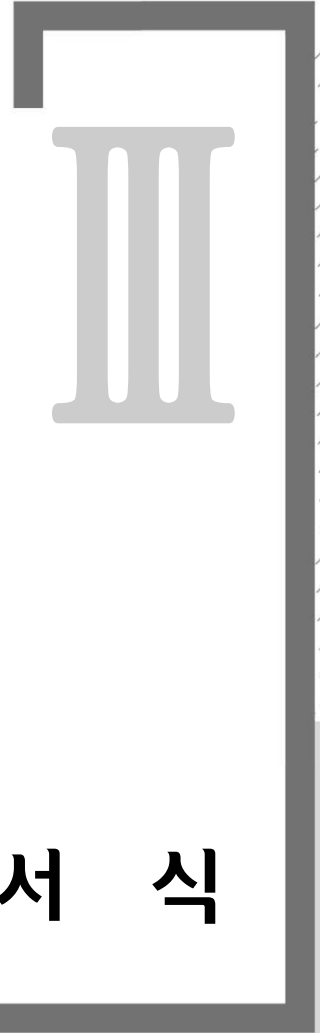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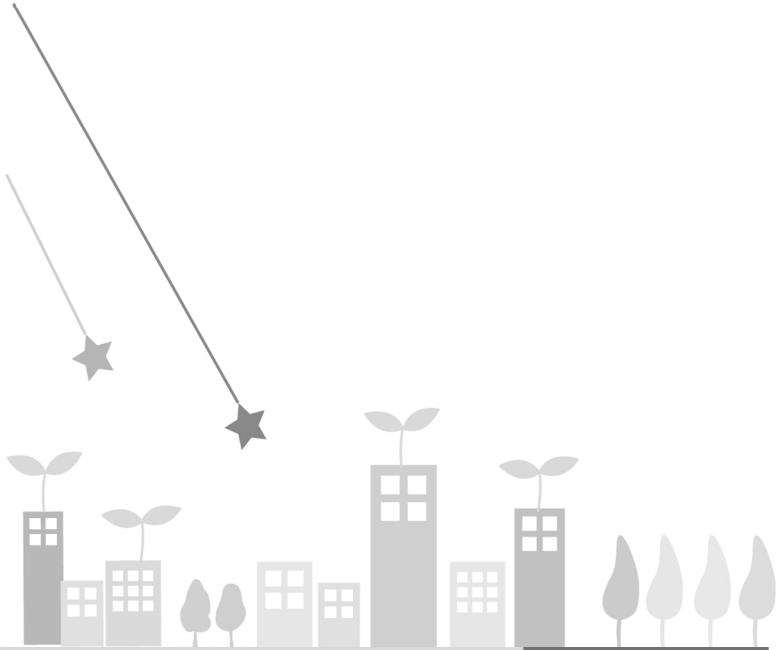
가점 항목

○ 다제내성균(6종) 관리·신고 여부

지표 번호	지표명	배점
가점1	다제내성균(6종) 관리 신고 여부	2점
평가기준	<p>가. 의료관련감염병(다제내성균 6종*)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여부 및 정기적 신고 여부 (1점)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다제내성녹농균(MRPA),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p> <p>나. 다제내성균 전파 예방·관리를 위한 내부지침 마련 여부 (0.5점)</p> <p>다. 다제내성균 전파 위험 및 예방에 대한 교육 훈련 시행 여부 (0.5점)</p>	
기준설명	<p>가-1 「의료관련감염병관리지침」에 의거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 주간단위(매주 화요일)로 질병보건통합시스템(http://is.cdc.go.kr)에 신고를 하고 있다 - 관련서류확인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증빙자료, 신고현황)</p> <p>나-1 의료기관 내 다제내성균 전파를 예방, 관리하기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과 재정 및 인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 관련서류확인 (감염관리지침서 등)</p> <p>다-1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다제내성균 전파 위험 및 예방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시행하고 실제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교육시행현황확인 (자체교육일 경우 교육자료, 일시, 장소, 강사, 대상, 방명록 등/외부교육일 경우 증빙자료)</p>	
평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보건통합시스템 자료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 예정) ■ 다제내성균 관련 내부 지침 ■ 다제내성균 관련 교육 훈련 실시 결과보고 및 관련 근거자료 	

○ 국가지정입원치료 적용대상 감염병 입원치료 실적

지표 번호	지표명	배점
가점2	음압병실에서 “국가지정입원치료 적용대상 감염병” 대상 환자를 입원치료한 실적 (의심환자 입원 포함) - 대상 기간 : 16년도 및 17년도 상반기	3점
평가기준	가. 지역별 상대평가로 가점 배정	
기준설명	<p>가. 음압병실에서 “국가지정입원치료대상 적용대상 감염병*에 대해 감염병(의심)환자 입원치료한 실적을 지역별 상대 평가함.</p> <p>* 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치료대상 운영규정(시행 2016.12.30.) 제6조(적용대상 감염병)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nimal Influenza, AI), 신종인플루엔자(Pandemic Influenza, PI), 신종감염병증후군, 생물테러감염병 및 질병관리본부장이 격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p> <p>※ 음압병상 확충 완료 전(공사중)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가점지표 미반영</p>	
평가자료	실적 보고 자료 등	



서식

1 평가표



2017 감염병관리시설 평가표

기관 명		
부 문 (평가위원 작성)	시설기준 적합성	근무인력 적정성, 진료 및 운영실적
날 짜 (평가위원 작성)		
평가위원 성명		
점 수 (평가위원 작성)	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시설기준 적합성

○ 음압격리병동 시설

- 평가지표 1-1-1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평가결과(평가위원 작성)		
1-1-1	시설구성이 적절하고, 적정규격을 확보하였는가?					6점	(____ 점)		
평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자체평가 _____ 점			
	5	4	3	2	1				
평가 기준	가. 1인병실(병실 유효면적* 15㎡ 이상, 외부조망 확보, 벽면 요철 최소화)								
	- 유효면적 : 전실, 화장실, 벽체 등을 제외한 순수 유효면적 ('15년 이전 설치 시설의 경우, 설치 당시 지침을 준용한다.)								
	- 1인병실 유효면적은 18㎡ 이상을 권장한다								
	나. 직접 진입 가능한 병실 내부 부속화장실 설치								
	다. 병실과 내부복도의 전실(유효면적 4㎡ 이상, 깊이 2.4m 이상, 출입문 유효폭 1.2m 이상(권장))								
	라. 감염병동전용 간호스테이션 설치								
	- 간호스테이션에서 음압격리병동 복도 관찰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								
	마. 착탈의실 및 샤워실 설치('15년 이전 설치 시설 중 공간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설치 불가할 경우, 위기시를 대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 탈의실 내 의료진 등이 개인보호구 탈의 전 제독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과 제독장비 구비(권장)									
바. 장비보관실('15년 이전 설치 시설 중 공간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설치 불가할 경우, 위기시를 대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사. 폐기물처리실('15년 이전 설치 시설 중 공간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설치 불가할 경우, 위기시를 대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아. 실내 천정고 2.4m 이상									
검토 의견 (평가 위원 작성)									

📦 시설기준 적합성

○ 음압격리병동 시설

- 평가지표 1-1-2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평가결과(평가위원 작성)		
1-1-2	시설 내 공간배치는 적절한가?					4점	(____ 점)		
평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자체평가			
	5	4	3	2	1	____ 점			
						예	아니오	제출자료 및 페이지	
평가 기준	가. 음압격리구역 내부시설(병실, 내부복도, 장비보관실, 폐기물 처리실 등) 공간배치 적절성								
	나. 음압격리구역 진출입시설(복도전실, 착탈의실, 샤워실 등) 공간배치 적절성								
	다. 비음압구역의 지원시설(간호스테이션, 휴게실, PPE보관실 등) 공간배치 적절성								
	라. 간호스테이션의 환자관찰 용이성								
	마. 병실 출입문에 관찰창(0.72㎡) 설치								
검토 의견 (평가 위원 작성)									

■ 시설기준 적합성

○ 음압격리병동 시설

- 평가지표 1-1-3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평가결과(평가위원 작성)		
1-1-3	의료진, 환자 및 폐기물 등의 동선이 적절하게 분리되었는가?				4점	(____ 점)		
평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자체평가		
	5	4	3	2	1	____ 점		
						예	아니오	제출자료 및 페이지
평가 기준	가. 의료진과 환자의 음압격리구역 진출입 동선 분리('15년 이전 설치 시설 중 공간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분리가 불가한 경우, 위기시를 대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나. 의료진 진출입 동선 분리(착탈의실 구분 설치)('15년 이전 설치 시설 중 공간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분리가 불가한 경우, 위기시를 대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다. 공급품 및 폐기물 동선 분리(권장)('15년 이전 설치 시설 중 공간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분리가 불가한 경우, 위기시를 대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검토 의견 (평가위원 작성)								

📦 시설기준 적합성

○ 음압격리병동 시설

- 평가지표 1-1-4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평가결과(평가위원 작성)		
1-1-4	시설의 기밀성이 확보되었는가?					3점	(____ 점)		
평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자체평가			
	5	4	3	2	1	____ 점			
						예	아니오	제출자료 및 페이지	
평가 기준	가. 바닥 벽, 벽과 천장, 벽체 패널 등 조인트 및 창호의 기밀성 확보 및 누기 최소화								
	나. 전등, 콘센트, 의료장비용 콘솔, 배관 등 시설 내 부착물 및 설치물의 기밀 시공								
	다. 벽체, 바닥, 천장의 모서리 부분을 둥근 형태(rounding)로 처리								
	라. 내구성 및 내화학성, 항균성이 있는 재료 사용								
검토 의견 (평가위원 작성)									

📌 시설기준 적합성

○ 음압격리병동 시설

- 평가지표 1-1-5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평가결과(평가위원 작성)		
1-1-5	교차감염 억제장치를 적용하였는가?					3점	(____ 점)		
평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자체평가			
	5	4	3	2	1	____ 점			
						예	아니오	제출자료 및 페이지	
평가 기준	가. 전실(병실전실, 복도전실 등)의 인터락 구조 설치(비상시 해제 가능)								
	나. 비접촉식 자동 출입문(발 스위치, 근접작동(센서형) 스위치 적용) 설치								
	다. 비접촉식 수도꼭지								
	라. 세면기 등 위생시설의 벽 배관 형식 시공(권장)								

검토 의견
(평가위원 작성)

시설기준 적합성

○ 음압설비 등 운영

- 평가지표 1-2-1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평가결과(평가위원 작성)		
1-2-1	음압격리구역의 급배기설비가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가?					6점	(____ 점)		
평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자체평가			
	5	4	3	2	1	____ 점			
						예	아니오	제출자료 및 페이지	
평가 기준	가. 다른 급배기시설과 구분된 음압격리구역 전용의 급배기시설 설치								
	나. 각 실별 배기덕트에서 헤파필터 혹은 동급의 필터를 통해 단독으로 전량 외부 배출하고, 배기팬은 말단에 설치 ※ 각 실의 배기구마다 필터를 설치하거나 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한 경우, 필터 또는 댐퍼 후단부터 배기덕트 통합 배기 가능								
	다. 배기팬 고장 시 자동으로 전환되는 예비용 배기팬 설치								
	라. 급기구에 헤파필터가 없는 경우, 급기배관에 역류방지댐퍼 설치								
	마. 음압병실과 전실의 환기횟수는 6회/시간 이상 - 환기횟수 12회/시간 이상을 권장								
	바. 음압격리구역 내 팬코일 유닛이나 시스템 에어컨 등 재순환 냉방장치 미설치								
	사. 입원환자 머리 근처에 배기구 설치(권장)								
	아. 배기구 말단은 타 공조시스템의 인입구, 개폐가능한 창호, 출입구 등에서 2m 이상 격리하여 설치								
검토 의견 (평가위원 작성)									

시설기준 적합성

○ 음압설비 등 운영

- 평가지표 1-2-2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평가결과(평가위원 작성)		
1-2-2	음압격리구역 내 차압이 적절하게 유지되는가?					4점	(____ 점)		
평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자체평가 _____ 점			
	5	4	3	2	1				
평가 기준	가. 음압격리구역 내 각 실 간 음압차가 -2.5pa 이상 유지								
	나. 일반구역에서 오염구역으로 공기가 흐르도록 단계적 차압 설정 - 음압구역 내 각 실별 표준 차압을 제시할 것을 권장								
	다. 음압구역 내 차압 모니터링을 위한 차압계 및 차압표시기 설치								
	라. 음압 수치 이상 시 비상알람 작동								

검토 의견
(평가 위원 작성)

시설기준 적합성

○ 음압설비 등 운영

- 평가지표 1-2-3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평가결과(평가위원 작성)		
1-2-3	음압격리구역의 급배수 및 폐수처리설비가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가?					4점	(____ 점)		
평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자체평가			
	5	4	3	2	1	____ 점			
						예	아니오	제출자료 및 페이지	
평가 기준	가. 음압격리구역 내 급배수 배관 및 통기관에 역류방지장치 설치 - 실별 개별 급탕설비를 갖출 경우, 급탕용 배관에 대해 역류 방지장치 예외								
	나. 음압격리구역의 배수관은 전용 폐수저장탱크까지 단독 설치 (권장)								
	다. 음압격리구역의 폐수는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에서 살균 또는 멸균하여 처리 후 원내 폐수처리설비에 합류								
	라. 미생물 비활성화를 위한 설비 및 BI(Biological Indicator) test 검증포트 설치								
	마. 폐수저장탱크 통기관 설치 및 통기관 말단에 제균필터 설치								
검토 의견 (평가위원 작성)									

❏ 시설기준 적합성

○ 음압설비 등 운영

- 평가지표 1-2-4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평가결과(평가위원 작성)		
1-2-4	음압격리구역의 전기통신설비가 적합하게 설치 운영되는가?				3점	(____ 점)		
평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자체평가 ____ 점		
	5	4	3	2	1			
평가 기준	가. 음압격리병실 내 국부조도가 500Lux 이상이며, 기밀구조인 조명기구 사용							
	나. 화상전화, 무선통신기기 등으로 면회 또는 의료용 통신 가능							
	다. 병동 및 병실 관찰용 CCTV 설치							
	라. 비상발전기 및 UPS설비 연결							
검토 의견 (평가 위원 작성)								

시설기준 적합성

○ 음압설비 등 운영

- 평가지표 1-2-5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평가결과(평가위원 작성)		
1-2-5	음압격리구역의 자동제어설비가 적합하게 설치 운영되는가?				3점	(____ 점)		
평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자체평가		
	5	4	3	2	1	____ 점		
						예	아니오	제출자료 및 페이지
평가 기준	가. 배기시스템 정지 시 급기시스템 자동 정지(급배기시스템 연동)							
	나. 음압격리시설 오작동* 시 비상경보가 작동되며, 관련 기록 저장 * 오작동 : 음압기준치 미달, 온습도 수치 이상 등							
	다. 음압격리구역의 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고 온습도, 차압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 - 간호스테이션과 중앙관제실에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라. 음압시설 및 설비의 주기적 점검 실시 - 매년 1회 이상 시설설비검증 및 TAB test 실시							
검토 의견 (평가위원 작성)								

▣ 근무인력 적정성

○ 격리병상 전담인력 구성 및 운영

- 평가지표 2-1-1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평가결과(평가위원 작성)		
2-1-1	입원치료병상 운영조직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6점	(____ 점)		
평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자체평가			
	5	4	3	2	1	____ 점			
						예	아니오	제출자료 및 페이지	
평가 기준	가. 입원치료병상 운영팀 및 감염관리위원회가 병원 내 별도조직으로 추가된 조직도 제시								
	나. 환자진료, 감염관리, 행정지원, 진료지원, 등 업무별 대응조직 구성								
	다. 세부조직별 전담 인력 배치 여부								
	라. 대응조직별 구성원 및 역할 지정 명시								
	마. 원내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및 연 1회 이상 음압격리병동 관련 운영실적 확인								
	바. 감염전문인력* 보유현황(평시 감염전문인력 수) * 감염내과·호흡기내과·소아과(감염)·중환자 전문의,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등								
검토 의견 (평가위원 작성)									

근무인력 적정성

○ 격리병상 전담인력 구성 및 운영

- 평가지표 2-1-2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평가결과(평가위원 작성)		
2-1-2	음압 및 일반 격리병상 수에 따른 적절한 의료진 운용계획이 마련되었는가?				6점	(____ 점)		
평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자체평가		
	5	4	3	2	1	____ 점		
평가 기준	가. 격리병상 입원환자 수에 따른 의료진 운용계획 수립					예	아니오	제출자료 및 페이지
	나. 감염환자 진료시 협진체계 마련							
	다. 결원 발생 등 의료진 부족 상황 시 의료진 동원계획 마련							
검토 의견 (평가 위원 작성)								

▣ 근무인력 적정성

○ 격리병상 전담인력 구성 및 운영

- 평가지표 2-1-3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평가결과(평가위원 작성)		
2-1-3	운영조직의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관리하는가?					3점	(____ 점)		
평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자체평가 ____ 점			
	5	4	3	2	1	예	아니오	제출자료 및 페이지	
평가 기준	가. 전담인력 비상연락망 구축								
	나. 연락불가 시 대처방안 제시								

검토
의견
(평가
위원
작성)

근무인력 적정성

○ 격리병상 전담인력 교육·훈련 등 역량관리

- 평가지표 2-2-1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평가결과(평가위원 작성)		
2-2-1	전담인력에 대해 격리병상운영 및 신종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적합한 교육을 시행하는가?				5점	(____ 점)		
평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자체평가		
	5	4	3	2	1	____ 점		
평가 기준	가. 건강교육 및 감염관리를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					예	아니오	제출자료 및 페이지
	나. 직무와 관련된 질병별 개인보호구 선택 및 착용의 교육 실시							
	다. 신종감염병에 대한 역학적 특성 및 감염관리방법 교육 실시							
	라. 병원체 노출 및 감염에 대한 사후조치 관련 교육 실시							
검토 의견 (평가위원 작성)								

▣ 근무인력 적정성

○ 격리병상 전담인력 교육·훈련 등 역량관리

- 평가지표 2-2-2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평가결과(평가위원 작성)		
2-2-2	병원 내 위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모의 훈련을 시행하는가?				5점	(____ 점)		
평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자체평가		
	5	4	3	2	1	____ 점		
						예	아니오	제출자료 및 페이지
평가 기준	가. 신종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연 1회 이상 실시							
	나. 훈련 대상 감염병 환자 입원격리치료과정이 포함된 훈련프로그램 제시							
	다. 훈련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확인 및 조치결과							

검토
의견
(평가
위원
작성)

근무인력 적정성

○ 격리병상 전담인력 교육·훈련 등 역량관리

- 평가지표 2-2-3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평가결과(평가위원 작성)		
2-2-3	전담인력의 위험도를 고려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는가?				5점	(____ 점)		
평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자체평가		
	5	4	3	2	1	____ 점		
						예	아니오	제출자료 및 페이지
평가 기준	가. 정기적인 신체검사 및 계절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시행							
	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관리							
	다. 신종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당직비, 위험수당 등 보상체계							
	라. 격리가 필요한 전담인력이 거처할 수 있는 거주공간 제공 계획 수립							

검토 의견
(평가위원 작성)

진료 및 운영

○ 환자 적정관리

- 평가지표 3-1-1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평가결과(평가위원 작성)		
3-1-1	적절한 환자처리절차(입퇴원, 검사, 이송, 사망)가 구비되어 있는가?				4점	(____ 점)		
평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자체평가		
	5	4	3	2	1	____ 점		
						예	아니오	제출자료 및 페이지
평가 기준	가. 확진(의심)환자 입원 절차 및 동선							
	나. 확진(의심)환자 병원 내 검사 절차 및 동선(권장)							
	다. 확진(의심)환자 이송 시 절차 및 동선(권장)							
	라. 확진(의심)환자 사망 시 절차 및 동선(권장)							
	마. 환자 완치 후 퇴원 절차 및 동선							
검토 의견 (평가 위원 작성)								

진료 및 운영

○ 환자 적정관리

- 평가지표 3-1-2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평가결과(평가위원 작성)		
3-1-2	위기상황 발생 시 음압격리병동 내 일반환자에 대한 조치계획이 마련되었는가?					3점	(____ 점)		
평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자체평가			
	5	4	3	2	1	____ 점			
평가 기준	가. 음압격리병동 내 일반환자가 4시간 이내 전동완료 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 여부						예	아니오	제출자료 및 페이지
	나. 의심환자 입원 시 병실 간 교차오염을 감안한 환자 입원 계획 수립 여부(권장)								

검토 의견
(평가 위원 작성)

진료 및 운영

○ 환자 적정관리

- 평가지표 3-1-3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평가결과(평가위원 작성)		
3-1-3	적절한 보호자 및 방문자 관리 방안이 마련되었는가?				2점	(____ 점)		
평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자체평가		
	5	4	3	2	1	____ 점		
평가 기준						예	아니오	제출자료 및 페이지
	가. 보호자 및 방문자 관리규정 수립							
	나. 보호자 및 방문자 대상 감염예방교육 자료 또는 계획 보유 여부							
	다. 격리구역 출입대장 기록 및 보관 실시 여부							
	라. 확진(의심)환자 사망 시 절차 및 동선(권장)							
마. 환자 완치 후 퇴원 절차 및 동선								
검토 의견 (평가위원 작성)								

진료 및 운영

○ 환자 적정관리

- 평가지표 3-1-4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평가결과(평가위원 작성)		
3-1-4	환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는가?				2점	(____ 점)		
평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자체평가		
	5	4	3	2	1	____ 점		
평가 기준						예	아니오	제출자료 및 페이지
	가. 환자-의료진 의사소통 방안 마련(권장)							
	나. 환자-보호자 의사소통 방안 마련							
	다. 외국인 의심 환자 대응을 위한 통역지원 계획 구비 여부							

검토 의견
(평가 위원 작성)

진료 및 운영

○ 감염병관리장비 및 병실 관리

- 평가지표 3-2-1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평가결과(평가위원 작성)		
3-2-1	입원치료병동 내 적절한 감염예방물품을 사용하는가?					2점	(____ 점)		
평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자체평가			
	5	4	3	2	1	____ 점			
평가 기준	가. 탈의실 내 개인보호구 폐기 용기, 전신거울 등 배치					예	아니오	제출자료 및 페이지	
	나. 병실전실 내 개인보호구 착용 점검 안내서, 전신거울, 손소독제, 격리의료폐기물 처리용 내피비닐 및 전용용기 등 배치								
	다. 음압격리병실 내 치료 시 일회용 또는 전용장비* 사용 유무 * 이동식 X-ray 장비, 청진기, 혈압계, 온도계 등								
검토 의견 (평가위원 작성)									

진료 및 운영

○ 감염병관리장비 및 병실 관리

- 평가지표 3-2-2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평가결과(평가위원 작성)		
3-2-2	청소 및 소독을 위한 적절한 절차 및 방법이 마련되었는가?				2점	(____ 점)		
평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자체평가		
	5	4	3	2	1	____ 점		
						예	아니오	제출자료 및 페이지
평가 기준	가. 격리병동의 청소 및 소독 계획 마련 여부(위기발생 시, 격리환자 입원 중, 격리환자 퇴원 시, 위기상황 종료 시)							
	나. 청소 및 소독 시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지침 마련 여부(권장)							
	다. 격리병상 전담인력 중 소독 담당 인원 지정 및 관련업무 훈련 수료 여부							
	라. 격리병실, 화장실, 출입문, 의료장비 등에 대한 소독방법 마련 여부(권장)							
검토 의견 (평가위원 작성)								

진료 및 운영

○ 감염병관리장비 및 병실 관리

- 평가지표 3-2-3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평가결과(평가위원 작성)		
3-2-3	격리병동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및 세탁물 처리방침이 마련되었는가?				3점	(____ 점)		
평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자체평가		
	5	4	3	2	1	____ 점		
평가 기준	가. 격리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사용하며, 유출방지를 위한 내피 비닐 사용 여부					예	아니오	제출자료 및 페이지
	나. 허가를 받은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한 처리							
	다. 멸균처리 여부에 따른 폐기물 처리 방침 마련 여부							
	라. 격리병동에서 발생하는 세탁물 처리 지침 마련(권장)							
검토 의견 (평가 위원 작성)								

진료 및 운영

○ 감염병관리장비 및 병실 관리

- 평가지표 3-2-4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평가결과(평가위원 작성)		
3-2-4	상황별(평시, 감염병 (의심)환자 입원 시, 화재 시 등) 격리시설운영방침이 마련되었는가?				4점	(____ 점)		
평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자체평가		
	5	4	3	2	1	____ 점		
						예	아니오	제출자료 및 페이지
평가 기준	가. 평시 시설운영방침							
	나. 감염병 (의심)환자 입원 시 시설운영방침							
	다. 화재 시 시설운영방침							
	라. 정전 시 시설운영방침							
	마. 경보작동(음압 이상 등) 시 시설운영방침							
검토 의견 (평가위원 작성)								

진료 및 운영

○ 의료진 등 감염예방 관리

- 평가지표 3-3-1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평가결과(평가위원 작성)		
3-3-1	의료기관 직원 감염관리계획이 수립되었는가?					4점	(____ 점)		
평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자체평가 ____ 점			
	5	4	3	2	1				
평가 기준	가. 직원 감염관리 계획의 충실성 ※ 포함내용 ①건강진단 ②건강교육 및 감염관리를 포함한 안전교육 ③예방접종 프로그램, 직무와 관련된 질병에 대한 대책 ④위험에 노출된 직원에 대한 사후대책 ⑤직무와 관련된 감염위험에 대한 상담 ⑥직원 건강관리기록 유지관리 등								
	나. 확진환자 발생 시 관련정보(발생 일시, 원내 경우 이력 등) 병원 내 공유 방침 마련								
검토 의견 (평가위원 작성)									

진료 및 운영

○ 의료진 등 감염예방 관리

- 평가지표 3-3-2

지표 번호	지표명				가중치	평가결과(평가위원 작성)		
3-3-2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병원체 노출자 관리체계가 마련되었는가?				4점	(____ 점)		
평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자체평가		
	5	4	3	2	1	____ 점		
평가 기준	가. 병원체에 노출된 의료인에 의한 2차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능동감시체계 운영방침 수립 여부					예	아니오	제출자료 및 페이지
	나. 병원체 노출자(감염병환자 입원실 출입자, 환자관리와 관련된 접촉자 등)에 대한 명단 작성·관리 여부							
	다. 병원체 노출자 발생 시 대응지침 행동요령 구비 여부(권장)							
검토 의견 (평가 위원 작성)								

2 추가 증빙자료 서식



추가 증빙자료 서식

※ 기존 운영계획서 내 해당 지표와 관련한 증빙내용이 없을 경우, 아래 서식을 활용하여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 현황에 맞추어 기입 후 운영계획서 내 첨부하여 제출

○ <서식 1> 평가지표 2-2-3 증빙자료

- 가. 정기적인 신체검사 및 계절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시행

① 건강검진 등 신체검사

연번	구분	대상	시기	방법
1	예) 정기검진	전 직원	연중 0~0월	원내 건강검진센터 활용 혈액검사, X-ray 촬영 등
2				
3				

② 예방접종

연번	구분	대상	방법	시기	주의사항
1	예) 수두	신규 의사, 간호사 및 보건직	한 달 간격으로 2회 접종	채용 즉시	
2					
3					

- 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관리

지원계획 및 실적 서술

- 다. 신종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당직비, 위험수당 등 보상체계

연번	보상체계 구분	내용	대상
1	예) 당직비	감염병 (의심)환자 입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정기적 당직에 대한 당직비 지급	격리병상 전담 의료진 및 시설담당자 등
2			
3			

- 라. 격리가 필요한 전담인력이 거처할 수 있는 거주공간 제공 계획 수립

연번	구분	위치	거주가능인원	내용
1	예) 000호 병실	0층 격리병상 10m 이내	0명	환자 진료에 따른 감염 위험으로 미귀가자 발생 시 인근 병실 소개 후 거주공간으로 활용
2	예) 간이 컨테이너하우스	원내 주차장	0명	공중보건위기 발생으로 인한 외부 의료진 투입 시 주차장 일부 구역 폐쇄 및 시설 임대 후 거주공간 제공
3				

○ <서식 2> 평가지표 3-1-4 증빙자료

- 가. 환자-의료진 의사소통 방안 마련

서술 및 증빙사진 첨부

- 나. 환자-보호자 의사소통 방안 마련

서술 및 증빙사진 첨부

- 다. 외국인 의심 환자 대응을 위한 통역지원 계획 구비 여부

연번	언어 구분	방법	통역자 성명 또는 업체 명	전화번호
1	예) 영어	외국인 환자 입원 시 의료영어에 능통한 간호사 2명 교대 근무	000 간호사 또는 00여행사, 번역업체	000-0000-0000
2	예) 아랍어	지역 대학교 아랍어학과 교수와 사전 협의되어 있음	000 교수	000-0000-0000
3				

○ <서식 3> 평가지표 3-2-1 증빙자료

- 가. 탈의실 내 개인보호구 폐기 용기, 전신거울 등 배치

연번	구분	위치	증빙사진
1	예) 개인보호구 폐기 용기	탈의실 내	
2	예) 손소독제	탈의실 입구측 벽면 부착형	
3			

- 나. 병실전실 내 개인보호구 착용 점검 안내서, 전신거울, 손소독제, 격리의료폐기물 처리용 내피비닐 및 전용용기 등 배치

연번	구분	위치	증빙사진
1	예) 전신거울	병실전실 벽면	
2	예) 내피비닐	병실전실 내 수납공간	
3			

- 다. 음압격리병실 내 치료 시 일회용 또는 전용장비 사용 유무

연번	구분	일회용, 전용	수량	보관장소
1	예) 이동식 X-ray	전용	2	음압구역 내 장비보관실
2	예) N95 마스크	일회용	300	격리병동 내 물품보관실
3				

○ <서식 4> 평가지표 3-2-4 증빙자료

- 가. 평시 시설운영방침

서술(질환별 입원환자 현황(결핵, 항생제 내성 및 의료관련 감염병 등), 대기병실 호 수, 기존 음압격리구역 입원환자 전동계획, 공조설비 운영계획, 평시 출입문 사용 방법 등)
※ 운영계획서 내 해당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 추가 기술은 불필요

- 나. 감염병 (의심)환자 입원 시 시설운영방침

서술(평시 시설운영에서 전환하는 시기 및 방법, 공조설비 운영계획, 시설관리부서의 음압격리 구역 모니터링 방법 등)
※ 운영계획서 내 해당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 추가 기술은 불필요

- 다. 화재 시 시설운영방침

서술(화재 감지 방안, 화재 시 초동대응 계획, 화재 시 공조설비 운영계획, 환자 및 의료진 대피방법 등)
※ 운영계획서 내 해당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 추가 기술은 불필요

- 라. 정전 시 시설운영방침

서술(정전 시 초동대응 계획, 정전 시 공조설비 운영계획, 주전원 차단 시 전력공급 계획 등)
※ 운영계획서 내 해당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 추가 기술은 불필요

- 마. 경보작동(음압 이상 등) 시 시설운영방침

서술(경보작동 시 확인 절차, 확인 후 특이사항 유무에 따른 조치방안, 야간 및 주말 기간 중 이상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운영계획서 내 해당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 추가 기술은 불필요

3

참고자료



□ 2017년도 시범평가 대상기관 목록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29개소)

연번	소속 시도	기관 명
1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2		서울의료원
3		서울대학교병원
4		중앙대학교병원
5		한일병원
6	부산	부산의료원
7		부산대학교병원
8	대구	대구의료원
9		경북대학교병원
10	인천	인천의료원
11		가천대길병원
12		인하대학교병원
13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14		조선대학교병원
15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16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17	경기	국군수도병원
18		분당서울대병원
19		명지병원
20	강원	강릉의료원
21		강원대학교병원
22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23	충남	단국대학교병원
24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25		원광대학교병원
26	전남	국립목포병원
27	경북	동국대경주병원
28	경남	경상대학교병원
29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 감염병관리기관 중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81개소)

○ 지역별거점병원 50개소(국가지정 8개소 포함), 일반지정병원 31개소

연번	소속 시도	기관 명	비고
1	서울 (5)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지역
2		삼육서울병원	지역
3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지역
4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지역
5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지역
6	부산 (15)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지역
7		동아대학교병원	지역
8		부산의료원	국가지정,지역
9		왈레스기념 침례병원	지역
10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지역
11		좋은강안병원	지역
12		메리놀병원	일반
13		김원묵기념 봉생병원	일반
14		부산백병원	일반
15		동의병원	일반
16		대동병원	일반
17		부산성모병원	일반
18		부민병원	일반
19		부산보훈병원	일반
20		좋은삼선병원	일반
21	대구 (5)	경북대학교병원	국가지정,지역
22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지역
23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지역
24		대구파티마병원	지역
25		영남대학교병원	지역
26	인천 (9)	가천대길병원	국가지정,지역
27		나은병원	지역
28		인천사랑병원	지역
29		인하대학교병원	국가지정,지역
30		한림병원	지역
31		나사렛국제병원	일반
32		인천성모병원	일반
33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일반
34		국제성모병원	일반
35	광주(1)	광주기독병원	지역
36	울산(1)	동강병원	지역
37	대전 (5)	건양대학교병원	지역
38		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지역
39		대전선병원	일반
40		을지대학교병원	일반
41		대전보훈병원	일반

연번	소속 시도	기관 명	비고
42	경기 (12)	광명성애병원	지역
43		굿모닝병원(평택)	지역
44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지역
45		김포우리병원	지역
46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지역
47		동수원병원	지역
48		명지병원	국가지정, 지역
49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국가지정, 지역
50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일반
51		세종병원	일반
52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일반
53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일반
54	강원 (5)	강원대학교병원	국가지정, 지역
55		한림대학부속춘천성심병원	일반
56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일반
57		동해동인병원	일반
58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일반	
59	충북 (2)	청주의료원	지역
60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일반
61	충남 (4)	천안충무병원	지역
62		홍성의료원	지역
63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일반
64		백제병원	일반
65	전북 (3)	군산의료원	지역
66		예수병원	지역
67		원광대학교병원	국가지정, 지역
68	전남 (3)	목포기독병원	지역
69		목포중앙병원	지역
70		목포한국병원	지역
71	경북 (1)	차의과대학교 구미차병원	지역
72	경남 (9)	김해중앙병원	지역
73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지역
74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지역
75		창원파티마병원	지역
76		MH연세병원	지역
77		한마음창원병원	일반
78		새한솔병원	일반
79		우리병원	일반
80		고성성심병원	일반
81	제주(1)	제주한라병원	지역

※ 지역거점병원 77개소는 '2010년도 162.8억원 국고지원으로 격리외래 71개소, 격리중환자실 32개소가 구축되어 위기사 감염병 1차 진료기능 수행함

□ 감염병관리기관 중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106개소)

○ 지역별거점병원 27개소, 일반지정병원 79개소

연번	소속 시도	기관 명	비고
1	서울 (1)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지역
2	부산 (16)	좋은문화병원	일반
3		해동병원	일반
4		영도병원	일반
5		춘해병원	일반
6		광혜병원	일반
7		동래봉생병원	일반
8		부산고려병원	일반
9		구포성심병원	일반
10		해운대부민병원	일반
11		효성시티병원	일반
12		서울메트로병원	일반
13		세웅병원	일반
14		아름다운강산병원	일반
15		갑을녹산병원	일반
16		BHS한서병원	일반
1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일반
18	대전 (5)	한국병원	일반
19		대청병원	일반
20		유성선병원	일반
21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일반
22		신탄진한일병원	일반
23	광주(1)	광주일곡병원	지역
24	울산(1)	서울산보람병원	지역
25	경기 (10)	강남병원(용인)	지역
26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지역
27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지역
28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지역
29		남양주한양병원	지역
30		박애병원	지역
31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지역
32		원광대학교의과대학 산본병원	일반
33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일반
34		씨티병원	일반
35	강원 (6)	원주의료원	지역
36		강릉고려병원	일반

연번	소속 시도	기관 명	비고
37		속초의료원	일반
38		속초보광병원	일반
39		삼척의료원	일반
40		정선병원	일반
41	충북 (6)	옥천성모병원	지역
42		제천서울병원	지역
43		충주의료원	일반
44		성모병원	일반
45		금왕태성병원	일반
46		인곡자애병원	일반
47	충남 (13)	보령아산병원	지역
48		서산의료원	지역
49		예산종합병원	지역
50		천안의료원	일반
51		공주의료원	일반
52		현대병원	일반
53		아산충무병원	일반
54		서산중앙병원	일반
55		의료법인 계룡의료재단	일반
56		당진종합병원	일반
57		건양대부여병원	일반
58		성요셉병원	일반
59		서해병원	일반
60	전북 (2)	남원의료원	지역
61		정읍아산병원	지역
62	전남 (3)	순천한국병원	지역
63		여천전남병원	지역
64		장흥병원	지역
65	경북 (5)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	지역
66		구미강동병원	지역
67		김천의료원	지역
68		포항의료원	지역
69		안동의료원	일반
70	경남 (32)	동마산병원	지역
71		창원병원	일반
72		진해연세병원	일반
73		제일병원	일반
74		진주고려병원	일반
75		반도병원	일반
76		복음병원	일반

연번	소속 시도	기관 명	비고	
77		조은금강병원	지역	
78		진주세란병원	일반	
79		한일병원	일반	
80		통영적십자병원	일반	
81		새통영병원	일반	
82		통영서울병원	일반	
83		e좋은병원	일반	
84		통영세계로병원	일반	
85		삼천포서울병원	일반	
86		삼천포제일병원	일반	
87		제일병원	일반	
88		센텀밀양병원	일반	
89		대우병원	일반	
90		거봉백병원	일반	
91		맑은샘병원	일반	
92		의령병원	일반	
93		영동병원	일반	
94		한성병원	일반	
95		강병원	일반	
96		더조은병원	일반	
97		남해병원	일반	
98		하동병원	일반	
99		함양성심병원	일반	
100		거창적십자병원	일반	
101		서경병원	일반	
102		제주 (5)	서귀포의료원	일반
103			한국병원	일반
104			한마음병원	일반
105			중앙병원	일반
106			서귀포열린병원	일반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38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39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감독·지원의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의3(감염병환자등의 격리 등을 위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법 제4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조사·진찰을 하거나 격리·치료 등을 하는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감염병환자등을 위한 1인 병실[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을 갖춘 병실을 말한다]을 설치한 감염병관리기관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제9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제9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2항 후단 및 법 제3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1. 감염병관리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한 음압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나. 30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2. 격리소·요양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추는 것

3. 진료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일 것

② 삭제

제31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① 법 제39조의2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정기적 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관리시설의 시설기준 적합성

2. 감염병관리시설의 근무인력 적정성
3. 감염병관리시설의 진료 및 운영실적
4. 그 밖에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39조의2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정기적 평가는 모든 감염병관리시설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서면평가 결과 추가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실시일,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평가실시일 및 평가항목: 평가실시일 90일 전
 2. 세부 평가일정: 평가실시일 7일 전
 - ⑤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⑥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운영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절차 및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2016.6.30. 시행) 제31조제1항제1호가목관련 (별표4의2)

음압병실 설치·운영 기준(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1. 설치기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 가. 음압병상: 1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 나. 전실: 음압병상이 있는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다. 화장실: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할 것
 - 라. 음압용 공급·배출 시설: 다른 공급·배출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고, HEPA필터(HEPA filter)를 설치할 것
 - 마. 음압용 역류방지시설: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의 배관에 설치할 것
 - 바. 음압용 배수처리집수조 시설: 다른 배수처리집수조 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운영기준
 - 가.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 간에, 전실과 비음압구역 간의 음압차를 각각 -2.5 pa(-0.255 mmAq) 이상 유지할 것
 - 나.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은 1시간에 6회 이상 환기할 것
 - 다. 배수처리집수조에 있는 물은 소독하거나 멸균한 후 방류할 것
- 비 고
- 음압병실의 설치·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2017.1.25. 시행)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7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이 설치한 감염병관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평가지기 등) 감염병관리시설의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고, 서면평가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서면평가 결과 추가적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평가항목 등) ① 감염병관리시설 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관리시설의 시설기준 적합성(40%)
2. 감염병관리시설의 근무인력 적정성(30%)
3. 감염병관리시설의 진료 및 운영실적(30%)

②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배점 등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평가기관)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는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평가기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평가기관장은 필요시 평가업무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감염병관리시설 평가위원회) ① 평가기관장은 감염병관리 및 감염병관리 시설 전문가 등으로 감염병관리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위원회는 평가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결과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① 평가기관장은 평가업무에 참여한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는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평가절차) ① 평가기관장은 제2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실시일,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평가실시일 및 평가항목 : 평가실시일 90일 전
2. 세부 평가일정 : 평가실시일 7일 전

②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장이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사실여부 및 추가적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제8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의 활용) 평가기관장은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 하거나 운영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2016.12.30. 시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하 "치료병상"이라 한다)"이란 평시와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이하 "위기 시"이라 한다)" 신종 감염병환자 등을 입원치료함에 있어서 환자 및 의료진의 감염예방과 병원성 미생물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 내 특수 시설·설비가 설치된 구역을 가진 감염병관리시설을 말한다.

② "감염병환자 등"이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및 이들과 접촉한 자를 말한다.

③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운영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치료병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④ 제2조 제1항에 따른 "평시"란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 수준의 관심 단계 이하를 말하며, "위기 시"란 주의 단계 이상을 말한다.

제3조(사업안내 및 신청)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 안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공모를 통해 관내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 접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 참여 의향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 제안서를 각각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 및 평가) ① 시·도지사는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출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 명단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한다.

② 사업 참여 선정기준은 의료기관내 감염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세부 전문의 유무, 감염관리위원회 유무, 감염관리 및 감염환자 진료·보호를 위한 적정 의료인력·시설·장비 등의 확보·구비·배치 정도 등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최종 선정·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선정평가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질병관리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선정평가위원회 자문 및 평가를 거쳐 당해 연도 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당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5조(시설 설치기준 등) ① 제4조에 따라 사업 참여가 확정된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을 설치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시설 등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운영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시설설치 적격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시설 사용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③ 치료병상 시설 설치에 대하여 확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

제6조(적용대상 감염병) ① 치료병상 입원치료 적용 대상 감염병은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 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생물테러감염병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에도 질병관리본부장이 격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감염병을 치료병상 입원치료 적용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방법 및 절차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른다.

제7조(평시 병상활용 및 전동조치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위기 시가 아닌 평시에는 치료병상을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치료를 위한 병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치료병상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환자 등을 위한 대기병상은 전체 보유 음압병상의 20% 이상으로 하되, 최소 1병실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조직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위기 시를 대비한 치료병상의 효율적인 가동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평시가 아닌 위기 시에는 치료병상에 입원된 환자를 즉시 전동 조치하고, 격리를 필요로 하는 감염병환자 등을 위한 치료병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제8조(감염관리) ① 의료기관의 장은 평시 치료병상을 운영 및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병원 감염관리와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 활동 실행계획을 수립 시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신종 감염병환자 및 의료진 등에 대한 별도의 감염관리와 예방 조치사항을 정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①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의 적정 음압유지 여부, 인공 호흡기 등 필수 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한 평시 점검 및 보수·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질병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철저히 행함으로써 위기 시 즉시 치료병상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대비책 마련) ① 의료기관의 장은 위기 시를 대비하여 치료병상 가동에 따른 세부 운영계획(이하 "위기 시 치료병상 가동 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병원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기 시 치료병상 가동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진료·감염관리·행정지원·진료지원 등의 전담팀으로 구성된 운영조직의 구성 및 팀별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
2.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병원 내 폐쇄구역 설정 및 폐쇄방법에 관한 사항
4. 감염병환자 등의 입·퇴원 시 별도 동선 확보에 관한 사항
5. 기존 입원환자 전동 조치 시 필요한 병상 마련, 인수인계 과정, 병실 소독 실시 및 전동조치 소요시간에 관한 사항
6. 검사, 진료, 의료진 감염예방에 관한 사항
7. 의료폐기물 등 감염위험물질의 운반경로 및 폐기와 관한 사항
8. 보호자 및 방문자 관리에 관한 사항
9. 다른 감염병환자들을 입원시키기 위한 병실 준비에 관한 사항
10. 위기상황 종료 후, 병실 소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의료기관의 장은 평시 자체 위기관리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체 수립한 위기 시 치료병상 가동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한 가상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의료기관의 장은 개인보호구 착·탈의 교육 등 감염예방관리 교육을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위기 시 치료병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경비) ① 치료병상에 입원 치료된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68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하되, 국가는 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2분의 1이상을 보조한다. 단,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외국인 감염병환자의 경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치료병상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치료병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감염병관리시설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경비를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 및 보고) ①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 보고하고, 관할 시·도지사는 제출·보고된 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보고한다.

1.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기상황 발생 시 치료병상 가동 운영계획서(최종 수립 시, 이후 변동 등의 경우 수시 제출·보고)
2.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자체 실시한 가상훈련 실시 결과 보고(연 1회 이상)
3.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자체 실시한 감염예방관리 교육 실시 결과 보고(연 1회 이상)
4. 연 1회의 시설설비 검증보고서(밀폐구역완전성 시험, 밀폐구역 설정 환기횟수 및 차압유지, HEPA필터 완전성 시험, 배기덕트 누기시험 포함) 및 인공호흡기 점검결과서
5. 당해연도 시설장비유지보수비 집행계획 및 정산 보고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치료병상 입원치료 환자 현황 및 치료병상 유지·운영 관리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치료병상 시설 장비에 대한 정상적인 유지 관리 상태를 검사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① 이 규정에 따라, 입원치료 및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 운영과 관련된 대외 발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과 사전 협의 후 실시해야 한다.

감염병 관리시설 평가지침

발행일 2017년 8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소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4층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감염병위기대응사업팀
홈페이지 www.cdc.go.kr / www.khealth.or.kr
문의처 043) 719-7243 / 02) 3781-2251
등록번호 11-1352159-000926-01 / 2017-02-009
